

스위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kr>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4
외교관계 / 6
주한주재 국기관 / 7
한국과의 주요이슈 / 8

II. 경제

경제정책 / 10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3
주요 산업 동향 / 14
정보조사 자료원 / 16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20
무역통계 / 20
투자통계 / 23

IV. 출장가이드

기후 /	26
시차.근무시간 /	27
도량형 /	27
출입국.비자 /	28
환율.환전 /	29
물가정보 /	30
교통.통신 /	32
호텔.식당 /	35
관공서 관행 /	39
공휴일 /	39
여행시 유의사항 /	40
유용한 연락처 /	42
관광명소 /	43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3
수입규제제도 /	45
관세제도 /	45
주요인증제도 /	48
지적재산권 /	49
소비자보호제도 /	50
교역관련 국가기관 /	51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2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3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5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57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58
운송 /	59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1
유형별 분쟁사례 /	62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5

우리기업 투자동향 / 69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70

투자인센티브 / 72

타당성조사 / 73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4

입지선정 / 77

공장 설립 / 77

투자관련 정부기관 / 7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9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80

조세제도 / 85

외환관리 / 86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6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스위스 (The Swiss Confederation)
위 치	위도 북위 45-48 도의 유럽대륙 중심부에 위치
면 적	41,285 km ² (※ 한국 : 99,394 km ²)
기 후	계절별 기온 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
수 도	베른 (Bern)
인 구	750 만 명
주요도시	취리히(109 만명), 제네바(49 만명), 바젤(46 만명)
민족(인종)	켈트족과 게르만족이 주류
언 어	독일어(64%), 불어(20%), 이탈리아어(7%), 레토로만어(1%)가 공용어
종 교	카톨릭(42%), 개신교(35%), 이슬람교(4%), 기타(3.2%)
건국(독립)일	1291 년 8 월 1 일(3 개 산악지역들이 최초로 스위스연맹동맹 결성)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Mr. Moritz Leuenberger(임기 : 2006. 1. 1. ~ 2006. 12. 31)
입 법 부	양원제(칸톤 대표회의 46 명, 국민회의 200 명)
정 당	사회민주당(SP, 61 석), 급진민주당(FDU, 5 석), 기독교민주당(CVP, 43 석), 스위스국민당(SVP, 64 석), 스위스녹색당(GPS, 14 석), 급진자유당(RLF, 54 석), 기타(노동당 등, 5 석)
정부성향	중립

나. 경제지표(2005 년 수치)

GDP(명목)	US\$ 3,668 억
실질경제성장률	1.9%
1 인당 GDP	US\$ 48,889
실 업 률	3.8%
물가상승률	1.2%
화폐단위	스위스프랑 (CHF)
환 율	- 1US\$ = 1.2458CHF, 1EURO = 1.5481CHF
외환보유고	US\$ 26,692 억
산업구조	농업(3.8%), 2 차산업(23.7%), 서비스산업(72.5%)
교역규모	- 수출 : US\$ 1,260 억(2005 년), US\$ 1,178 억(2004 년) - 수입 : US\$ 1,197 억(2005 년), US\$ 1,103 억(2004 년)
교 역 품	- 수출 : 정밀기계, 화학의약품, 시계, 광학의료기기 - 수입 : 자동차, 전기전자, 의류 등 소비재

다. 한-스위스 관계

체결협정	- 투자보장협정(71.9) - 정기항공운항협정(76.11) - 공업소유권협정(77.12) - 사증면제협정(79.6) - 이중과세방지협정(81.4) - 정기항공운항협정 부속서 개정(90. 8) - 항공협정(95. 5) - 무역경제협정(99. 6) - 한-EFTA FTA 공식협상개시 서명(2004. 12) - 한-EFTA 정식서명(2005. 12)
교역규모	- 대스위스 수출 : US\$ 576 백만(2005 년) ,US\$ 514 백만(2004 년) - 대스위스 수입 : US\$ 1,168 백만(2005 년), US\$ 1,211 백만(2004 년)
교역품	- 대스위스 수출 : 자동차, 핸드폰, 컴퓨터, 타이어 - 대스위스 수입 : 기계류, 화학의약품, 시계
투자교류	- 대한투자 : US\$ 40 백만(2005 년), US\$ 70 백만(2004 년) - 대스위스투자 : US\$ 2.43 백만(2005 년), US\$ 0.1 백만(2004 년)
교민	약 1,200 명

자료원 : 스위스통계청, 스위스관세청, 스위스국립은행, 한국산업자원부, INVEST KOREA, 수출입은행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행정부

스위스 연방정부는 스위스만의 독특한 내각책임제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임기 4 년의 7 인 각료가 장관을 역임, 행정부를 구성하며, 7 명의 연방각료 중 1 명이 매년 순번제로 대통령직을 수임하여 연방 각의 및 국가를 대표한다.

2006 년도 대통령직은 현 교통부 장관인 Mr. Moritz Leuenberger (스위스 사회민주당, SDP) 이 수행하며 대통령은 연방각의에 대한 총괄적인 관장권이 없으며 단지 소관부서에 대한 관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연방 각의에서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각기 소관부처 사항 이라 하더라도 각료 7 인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구성에 있어 정당별 연합 지도 체제를 택하고 있고 전원일치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 결정에 있어 대립이 없이 화합정치를 하고 있어 매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나. 사법부

스위스 사법제도는 3 심제로서 로잔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연방 의회에서 선출된 임기 6 년의 정규판사 26 명과 12 명 내지 16 명의 비정규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급심으로는 칸톤 관할의 제 1 심, 제 2 심이 있으며 특별법원으로는 노동, 공업, 상업, 보험 및 군사문제를 취급하는 제 1 심 및 항소법원이 있다. 또한, 연방법원과 별도로 사회 보험문제를 취급하는 연방보험법원이 있다.

다. 의회

연방의회는 상원에 해당하는 칸톤 대표의회(Staenderat: Council of States)와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Nationalrat : National Council)로 구성된다. 양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합동회의를 갖는다.

칸톤 대표의회는 20 개 칸톤 별로 각 2 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6 개의 반칸톤(Half Canton)은 각 1 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총 46 명으로 구성 된다. 국민의회는 총 200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매 4 년마다 인구비례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자료원 :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2005 년 12 월))

라. 선거제도

상원에 해당하는 칸톤 대표회의 의석 46 석 중 37 석은 국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시행되고 나머지 9 석 중 Iarus, Zug 및 Graubuenden 등 3 개 칸톤은 총선 전년도에 선거가 실시되며, Obwalden, Nidwalden, Appenzell Inner-Rhoden 등 3 개 반칸톤은 총선 직전 주민회의에서 선출한다. 국민의회는 26 개 칸톤이 선거구가 되는데 1919 년부터 비례대표제에 의거 각 정당별로 의석을 배당하고, 1 명만 선출하는 반칸톤에서는 다수제를 택하고 있다.

참고로 스위스에서는 국가의사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제(Direct Democracy)가 실시되고 있는데 국민투표에 상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가 국민투표제로 헌법개정안이나 국가의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나 의회에서 발안된 법안이며, 두 번째가 국민발안제로 18 개월 이내에 10 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으면 국민발안이 되어 전국적인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투표기간은 한달이며 투표장에 직접 가거나 우편 투표도 가능하다.

마. 정당제도 및 현황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당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원내진출정당은 무려 14 개 정당에 달하고 있다. 2003 년 10 월 선거결과에 의한 정당별 의석수와 각 정당의 정치노선은 아래와 같다(동 선거결과는 2007 년에도 적용됨).

1999 년/2003 년 총선 정당별 의석수 및 득표율 비교

비고	의석수		득표율	
	1999 년	2003 년	1999 년	2003 년
SVP(스위스 국민당, 우파)	44	55 (+11)	22.5	27.7 (+5.2)
SP(사회민주당, 중도좌파)	51	54 (+3)	22.5	24.2 (+1.7)
FDP (급진민주당, 좌파)	43	37 (-6)	19.9	16 (-3.9)
CVP(기독교민주당, 중도우파)	35	26 (-9)	15.9	12.9 (-3.0)
Gruene (녹색당)	9	13 (+4)	5.0	7.7 (+2.7)
기타	18	15 (-3)	14.2	11.5 (-2.7)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분

자료원 : Tages Anzeiger(2003 년 10 월)

3. 주요인사

연방정부 각료 명단

부 처	각 료 명	소속정당
교통동력부장관	Mr. Moritz Leuenberger	사회민주당(SP)
재무부장관	Mr. Hans-Rudolf Merz	급진민주당(FDP)
국방부장관	Mr. Samuel Schmid	스위스국민당(SVP)
외무부장관	Ms. Micheline Calmy-Rey	사회민주당(SP)
경제부장관	Mr. Joseph Deiss	기독교국민당(CVP)
내무부장관	Mr. Pascal Couchepin	급진민주당(FDP)
법무부장관	Mr. Christoph Blocher	스위스국민당(SVP)

○ Moritz Leuenberger

- 생년월일 : 1946.9.21(베른 Rohbach 출신)
- 학 력 : 1970 년 법학사 학위취득
- 주요경력
 - 변호사
 - 취리히 시의회 의원
 - 1979 년 연방의원(국민의회)
 - 1991 년 취리히 칸톤의회 의원 스위스세입자연맹 회장
 - 1995 년 연방각료 임명 (교통운송장관)
 - 2001 년 스위스 연방대통령
 - 2006 년 스위스 연방대통령

○ Hans-Rudolf Merz

- 생년월일 : 1942.11.10(Herisau 출신)
- 학 력 : St.Gallen 대학 경제학 박사
- 가족사항 : 기혼, 3 남
- 주요경력
 - 69-74 년 St.Gallen 급진민주당(FDP) 서기관
 - 74-77 년 Wolfsberg UBS 은행 교육담당 부소장
 - 77-03 년 기업컨설팅 사업, 서비스/산업기관들의 심의위원(Helvetia Patria AG, Anova Holding AG, Huber+Suhner AG, Concast Holding AG, SIG AG 등)
 - 03-현재 연방정부 각료

○ Samuel Schmid

- 생년월일 : 1947
- 학 력 : Bern 대학 법학 전공
- 가족사항 : 기혼, 3 남
- 주요경력
 - 74-82 년 : Rueti 시장
 - 78-98 년 : Lyss 에서 변호사 개업
 - 90-현재 : Bern 중소기업 협회 소장

- 91-현재 : 스위스 중소기업협회 위원
- 98-현재 : Bern 에서 Keller & Partner 법률사무소
- 98-99 년 : 스위스국민당(SVP) 대표
- 01-현재 : 연방각료
- 2005 년 : 연방대통령

○ Micheline Calmy-Rey

- 생년월일 : 1945.7.8(Wallis 출신)
- 학력 : Institute universitaire de Hautes Etudes Internationales, Genf(정치학)
- 가족사항 : 기혼, 2 자녀
- 주요경력
 - 86-93 년 Caisse d'epargne de Geneve 심의위원
 - 94-97 년 Geneve 국제공항 심의위원
 - 98-02 년 Geneve 연금기관 CIA 의 대표
 - 02-현재 스위스국립은행(SNB) 심의위원
 - 86-90 년 / 93-97 년 Geneve 칸톤(연방주)의 사민당(SP) 대표
 - 03-현재 연방정부 각료
 - 2006 년 외무부장관 연방부통령
 - 2007 년 연방대통령 예정

○ Joseph Deiss

- 생년월일 : 1946. 1. 18(Freiburg 출신)
- 학력 : Freiburg 대(경제사회학), 캠브리지대(경제학 박사)
- 가족사항 : 기혼, 3 남
- 주요경력
 - 83-99 Freiburg 대 경제학 교수
 - 93-96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
 - 81-91 Freiburg 주정부 의원
 - 91-99 연방의회 의원
 - 1999. 3. 11 연방각료 임명, 외무부장관
 - 2004 년 스위스 연방대통령

○ Pascal Couchepin

- 생년월일 : 1942. 4. 5(Valais 출생)
- 최종학력 : 법학사
- 가족사항 : 부인(Brigitte)와 3 자녀
- 주요경력
 - 1968 년 Martigny 시 공증위원
 - 1969 년 변호사 개업
 - 1976 년 Martigny 시 부시장
 - 1979 년 연방하원의원에 피선
 - 1984 년 Martigny 시 시장
 - 89-97 년 급진민주당 대표
 - 2003 년 스위스 연방대통령

- Christoph Blocher
 - 생년월일 : 1940.10.11(Schaffhausen 출신)
 - 학 력 : 법학박사
 - 가족사항 : 기혼, 3녀
 - 주요경력
 - 사업가 (EMS-Chemie Holding AG)
 - 74-78년 : Meilen 시장
 - 75-80년 : 취리히 칸톤 주정부 위원
 - 77-03년 : 스위스 국민당(SVP) 취리히 칸톤(연방주) 대표
 - 86-03년 : AUNS(Campaign for an Independent and Neutral Switzerland) 대표
 - 04-현재 : 연방정부 각료

4. 외교관계

가. 외교노선

1815년 비엔나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영세중립을 보장 받은 이후 영구중립, 영구무장, 보편주의의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외교관계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동구의 개방과 함께 실리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여 광범위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NATO 가맹국이 아니나, 96.12.11부로 NATO의 군사작전 참관과 평화 유지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NATO의 평화협력에 동참하여 벨기에에 소재한 나토본부에 대사급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시 미국 항공기의 자국영토 통과를 불허하는 등 중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 한 바 있다.

나. 지역협력체 참여 정도

EFTA, OECD 회원국이며 구주회의에도 가입하고 있으나, 1992년 12월에 실시된 E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결됨에 따라 EU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EFTA 회원국인 스위스는 정치적 중립주의, 직접 민주주의, 경제정책 및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우려와 값싼 외국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일반 국민 과반수 이상이 EU 가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스위스 연방정부는 국제적 고립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EU 가입 쪽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 2000년 11월에 2001년 외교방향을 발표하며, 2007년까지는 EU 회원국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실제로 2002년에는 UN 가입도 순조롭게 마친 바 있다. 한편, 2000년 5월에 실시된 스위스와 EU 간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67.2%의 찬성을 얻어 통과됨으로써 EU와의 경제협력기반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노동이동의 자유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EU와의 쟁점 현안사항이 해결되었다.

다. 자유무역협정 및 호혜협정 체결

스위스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EFTA는 EC(현 EU)와 '72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98.6월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가 논의된 이후 본격적인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98.10.1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EFTA와 튀니지,

이집트,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2000년 11월 7일에는 EFTA와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2001년 7월 발효)되어, 2007년까지는 스위스를 포함한 EFTA 회원국 및 멕시코간 대부분의 관세장벽이 철폐되게 된다.

이외에도 스위스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한편 ASEAN, NAFTA 등과의 관계정립을 모색 중이며,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레이트로 구성된 걸프협력기구(GCC)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전초단계로 산업협력선언문을 2000.5.23일 체결한 바 있다.

2005년 12월 기준 스위스를 포함한 EFTA 국가는 EU 및 15개국(불가리아, 칠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모로코,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싱가포르, 튀니지, 터키, 한국)과 자유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라. 스위스의 대한반도 정책

스위스의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표면상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스위스는 1969년 6월 한국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고 있으나 북한과는 1974년 12월 북한을 승인하였으나 상주공관 설치에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음.

스위스 연방정부는 1985년 6월 대 의회 답변을 통해 ‘남·북한 분쟁에 있어서는 스위스가 중립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스위스의 중립정책이 한국과 똑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1953년 한반도 휴전이 성립된 이래, 판문점의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에 대표를 파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해 오고 있음

궁극적으로 남·북한 쌍방간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계속 현 휴전협정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자료원 : 주 스위스 대사관)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스위스 대사관
 - Embassy of Switzerland
 - 주소: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Tel: 02-739-9511, Fax: 02-737-9392
 - Homepage: http://www.eda.admin.ch/seoul_emb/e/home.html
 - E-mail: swissemb@seo.rep.admin.ch
- 한-스위스 비즈니스 협의회
 - Swiss-Korean Business Council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3, 옥산 B/D 7층 ABB Limited
 - Tel: 02-528-3126, Fax: 02-528-3160

- 한-스위스 협회
 - Korean-Swiss Association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3가 1-12, 코리아헤럴드 빌딩 1409호
 - Tel: 02-753-4531, Fax: 02-756-3635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한-스위스 관계

62년 12월 양국간 국교가 수립되어 63년 3월에 우리나라의 상주공관이 베른에 설치되었고, 주한 스위스대사관은 64년 6월에 설치되었다.

스위스는 중립주의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리 추구면에서 경제, 기술협력, 교역대상으로 한국과의 교류에 비중을 두고 있다.

1953년 한국동란 휴전 이래, 중립국 감시위원단(NNSC)에 대표를 파견,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74년 12월 북한을 정식 승인하였으나 경제관계를 제외하고는 소원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북한이 스위스 기업의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있으나 컨츄리 리스크가 큰 북한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교역규모

한국과 스위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배경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교역규모가 늘어나 '93년의 경우 8억 1천만 불에 불과하였던 양국간 교역액은 '03년의 경우 18억불을 초과하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불 때 확대 추세에 있다.

양국간 교역에 있어 무역수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스위스에 대해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2001년 4억 2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3년까지 적자 폭이 늘어났으나 자동차, 핸드폰 수출의 높은 증가를 기반으로 2004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수출이 576백만 불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070백만 불로 3.9%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스위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연간 교역량은 수출 1,570억불 수입 1491억불로 약 3,061억불이다. 국가별 교역 비중에 있어서 EU가 전체 수출의 82.8%, 수입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스위스간 FTA가 오는 9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교역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스위스 수출입 현황

(단위 : US\$천)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1	431,876	850,049	△ 418,173
2002	448,641	1,001,207	△ 552,566
2003	433,246	1,442,102	△ 1,008,856
2004	513,651	1,210,997	△ 697,346
2005	576,042	1,168,001	△ 591,959

자료원 : 산업자원부

다. 교역품목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스위스는 시계 등 정밀기계, 의약 및 화학산업이 고도로 발달 되어 있어 경쟁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의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의 대 스위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핸드폰, TV, DVD Player 등의 가전제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타이어, 그리고 일반소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스위스는 산업구조상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만 국내생산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 나라 수출품목의 스위스 시장 진출여건은 밝은 편이다.

특히, 스위스 시장은 저가품이 통하지 않는 품질위주의 중.고가품 시장으로서 소비자 들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구매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스위스로부터 주로 정밀기계 및 화학제품,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중 상당수를 스위스제가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 정밀기계는 정확도 등에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라. 현안사항

스위스는 한국을 경제기술협력 및 교역대상국으로서 서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2005 년 7 월 한-EFTA FTA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고 11 월 제네바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문안확인 및 가 서명이 이루어졌다. 2005 년 12 월 홍콩 에서 정식서명이 이루어져 2006 년 9 월 1 일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 한-EFTA FTA 추진경과

- FTA 추진 가능성 협의단계
 - 2000 년 7 월 EFTA 측이 한-EFTA FTA 추진의사를 피력한 이후 EFTA 측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 유지
 - 2004 년 5 월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자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FTA 추진 타당성 검토단계
 - 2004 년 8 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연구 제 1 차 회의
 - 2004 년 10 월 서울에서 공동연구 제 2 차 회의
 - 2004 년 11 월 한-EFTA FTA 추진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
 - 2004 년 12 월 제네바에서 양측 통상장관 회의 시 협상 개시 선언
- 공식협상 진행단계
 - 2005 년 1 월 문안교섭 개시
 - 2005 년 9 월 협정문 가 서명(제네바)
 - 2005 년 12 월 협정문 정식 서명(홍콩)
 - 2006 년 6 월 국회비준
 - 2006 년 9 월 1 일 정식 발효

II. 경제

7. 경제정책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의 특성상 대외적으로 상호 협력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가. 주요 경제정책

1) 경제관련 제도법규의 EU 일치 추진

연방각의를 통해 경제관련 제도 및 법규를 EU 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총수출의 61%, 총 수입의 79%를 EU 와의 교역이 차지하는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U 와의 쌍무협정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 와의 쌍무 협정에 따라 스위스와 EU 간에는 2001 년부터 아래의 7 개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2) 노동이동 부문

노동자, 자영업자 등 EU 국민의 스위스 내 거주 단계적 자유화(현재는 외국인 근로 자는 체류허가증을 받아야만 함.)

2003 년에 스위스 국민들의 EU 국 거주, 2006 년에 EU 국민들의 스위스 거주에 자유가 실시

학위와 직업교육을 EU-스위스간 상호 인정,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국가간 상이한 사회 보장제도 조정

3) 교통정책 부문

스위스의 북쪽에서 남쪽을 연결하는 Gotthard 와 Lotschberg 기차터널을 건설.

현재 28 톤 이상 화물차의 알프스 통과 제한규정을 2001 년 34 톤, 2005 년에는 40 톤으로 완화

4) 항공교통 부문

- Swiss Air, Cross Air 등 스위스 항공사들의 유럽 대도시간 항공 운행권 유지
 - 2002년부터 타 유럽도시 경유 운행 인정
 - 2005년부터 타 국가의 도시들 (예: 베를린-뮌헨)을 연결하는 국내선 운항허용

5) 무역부문

EU-스위스 간의 무역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EU-스위스간 제품검사보고서, 증명서 및 확인증, 허가증을 상호 인정.

6) 공공입찰 부문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공공사업자 선정에 있어 소규모 도시에서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전 공공사업 분야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 허용.

EU 국가내의 연간 공공입찰 규모는 1조 스위스 프랑, 스위스는 연간 약 400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7) 연구, 학술부문

스위스와 EU 간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공유 허용

8) 농업부문

농산물 수입할당량 증가 및 관세 하향조정은 2005년부터 관세조정 예정.

나. 독과점 규제 경쟁법 개정

스위스는 은행, 보험 및 양조산업등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경제력집중이 완화 되었지만 여타 분야에서는 여전히 Paradise of Cartel 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서유럽 에서 가장 고도로 카르텔화된 경제체계를 가진 국가이다. 스위스 내에서 그간 카르텔 법(The Cartel Act)에 의거, 일부 산업에 대해 법적으로 카르텔 결성을 허용해 왔으나 연방정부는 향후 이를 금지 및 제한하기 위하여 경쟁법을 개정 준비중임.

현행 스위스 경쟁법에 의하면, 카르텔의 존재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강성카르텔(Harte Kartelle; Hard Core Cartel)은 완전 금지하고, 경쟁의 저해 정도가 미약한 연성카르텔(Weiche Kartelle; Light Cartel)의 경우 담합행위가 경제적 효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즉, 가격고정 및 시장점유와 같은 반경쟁관행은 금지하나, 카르텔이 공공의 이익을 과다하게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연구촉진, 기술교환 또는 자원의 보다 효율적 사용과 같은 기업간 협정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연방정부는 카르텔로 말미암아 스위스인의 생활비가 EU에 비해 50% 이상이나 비싸게 들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카르텔을 엄격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임.

다. 경제발전사

전체국토의 약 1/4 만이 농산물 재배에 적합할 정도로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도 근대 이전에는 농업 이외의 별도의 산업이 존재하지 않았음.

19 세기 중반까지 국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했으나 2 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농업인구 점유비율이 22%로 떨어졌었으며, 현재는 인구의 5% 미만이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 및 인력부족으로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부품을 조립 재판매 하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한정된 분야에서 전문화된 고기술,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산업이 발달

취라 산맥 지역은 농업과 임업이 발달하였는데, 겨울철의 유희 노동력을 이용한 시계 공업이 시작되어 로렉스 시계로 대변되는 시계산업이 현재의 대표산업으로 발전함

근대에 들어와 관광업이 태동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금융·보험업이 발달하기 시작함

2 차 대전 후 가공 식품 및 낙농업의 발달로 고급 버터와 치즈의 산지로도 유명해지 고 견제품, 봉제품, 시계, 기계, 기구, 화학제품, 초콜릿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2 차 세계대전 이후 집중적으로 발달

1978 년에서 1986 년 기간 중에 스위스가 국민소득 1 만불 시대에서 2 만불 시대로 도약했는데 이 기간 중 금융산업이 가장 크게 기여함

의료, 기계, 화학, 시계 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음

라. 금융시장 개황

유럽의 금융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원인은 국민의 높은 저축성, 사회적, 경제적 안정, 정치적 중립국, 비밀 은행구좌 등을 들 수 있다.

비밀은행구좌는 17 세기 때부터 시작되지만 1930 년 독일나치정권이 독일 고객 특히 유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해오자 1934 년 비밀주의 원칙을 입법화하였다. 1977 년 4 월 Chiasso(키아소)사건 이후 스위스 은행협회는 불법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주 신원과 자금 출처를 파악하도록 협약하였다. 또 외국정부와도 사법 공조를 협정, 체결하여 범죄와 관련된 자금 구좌일 경우, 상호 공개하도록 함으로 은행비밀주의가 많이 완화되었다. 1991 년 익명예금계좌제도의 폐지와 1994 년 보다 강력한 돈세탁 규제법안을 마련하였다.

연방 중앙 은행인 국립은행은 연방법 39 조항에 의하여 환거래 활동이 원활하도록 돈의 흐름을 관리하고, 나라 전체에 쓰이는 용자와 통화정책을 관리한다.

24 개의 주립은행(Kantonalbanken)이 있는데 그 중 23 개는 국가의 보증하에 세워 졌으며 칸톤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한다.

현재 3,300 개 이상의 은행이 있으며 대표적인 은행으로 UBS (Union Bank of Switzerland), CS (Credit Suisse) 가 있으며 UBS 는 2004 년 “The Banker” 저널에 따르면 자산 규모 세계 최대의 은행이다.

보험산업은 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대처하는 방편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발달되었다. 세계에서 보험에 가장 잘 들어 있는 국민들이 스위스인들이며 현재 230 여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며 이 중 약 10%는 재보험회사이며, 재보험 회사의 본부는 주로 취리히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마. 주요 금융산업 이슈

- 1934 년 은행비밀법이 제정되어 '늑버른 콘도'라는 비밀계좌 제도를 통해 금융업 이 막대한 수익을 올림
- 91 년 익명예금계좌제도 폐지
- 92 년 5 월 IMF 와 World Bank 가입
- 94 년 강력한 돈세탁 규제법안 제정
- 97 년 3 월 콜러 대통령은 스위스 국립은행이 보유한 금의 재평가액을 재원으로 기본 재산 70 억 스위스 프랑의 재단을 설립하여 국내외에 걸친 인도적 활동에 사용하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 동년 10 월에 "連帶기금"으로 명명된 동 기금의 운용, 자금, 활동의 개요가 발표됨.
- 국제자본시장으로서 전 세계의 자본을 흡수, 배분하는 회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 으나 유럽통합으로 런던과 프랑크푸르트가 새로운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부상함 에 국내경제에 그늘이 지고 있음.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2006 년 스위스 경제동향

2006 년 1 월 UBS 에서는 스위스 산업 전반에 걸친 증가세를 기반으로 실질 GDP 가 2.0% 상승할 것으로 UBS 에서 전망하였으나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호조세 지속 및 스위스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3 월 전망치를 2.3%로 수정했다. 2005 년도에는 수출 분야에서의 호조세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1.9%의 GDP 증가를 기록했으며 특히, 4 분기의 경우 2001 년 이후 최고 수준이 2.7%의 증가를 보였다. 2006 년 6 월 스위스국립은행에서는 수출 호조에 따라 경제 성장을 2.5%를 예상하고 있다.

2005 년 원유 가격 상승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은 1.2%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가격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5 년 겨울까지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석유가격이 2006 년에는 점차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식료품, 연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0.5% 미만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006 년 물가상승률은 0.6%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형태가 최근 경제의 주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현 시점에서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추진력 기반은 조금 약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2006 년 들어 노동시장 환경이 개선되며 실업률 감소가 예상 되며 2004 년부터 이어진 수출산업에서의 호조세가 경제 성장의 추진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2006 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지 표	2003	2004	2005	2006(예상)	2007(예상)
국내총생산	-0.3	2.1	1.9	2.3	1.3
소비자지출	0.8	1.4	1.6	1.9	1.6
정부지출	2.2	1.4	1.3	0.8	0.8
- 자본지출	-1.3	3.3	3.2	3.7	1.6
- 건설	1.8	4.1	3.6	2.5	1.2
- 장비	-3.8	2.7	2.8	4.8	2.0
수 출	-0.5	8.9	4.5	5.8	1.8
수 입	1.3	7.4	5.3	7.0	2.0
실업률	3.7	3.9	3.8	3.4	3.2
인플레이션율	0.6	0.8	1.2	0.8	1.1
3 개월 LIBOR 금리	0.3	0.7	1.0	1.6	1.6
10 년 정부채권배당률	2.6	2.3	1.9	2.5	2.5
CHF/EUR	1.56	1.54	1.55	1.55	
CHF/USD	1.27	1.15	1.30	1.20	

자료원: UBS

9. 주요 산업 동향

가. 2006 년 주요산업 전망

1) 자동차 산업

스위스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 410 만대로서 관련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포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 차량 수에서는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차량의 수명 증가, 차량 서비스, 수리 분야에서의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2001 년부터 2004 년 까지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2005 년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트러스트금지법규가 경직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브랜드에 대한 A/S 를 제공하는 업체의 시장 점유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의료 산업

의료산업은 스위스 내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 노령화, 의료기술 발달 및 전문화 등은 의학 서비스의 성장을 이끌었다. 2006 년에도 의료산업 분야는 계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며 건강을 위한 개인의 비용지출도 매년 3-4%씩 증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 유통산업

2006 년 소비자 지출은 1.7%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가장 높은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소비가전제품으로 홈 시네마 시스템, 평면 TV, 디지털 카메라 등이며 시장에 선보이는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 제공 경향은 치열한 경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분야는 스포츠 용품이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매장, 전문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화는 Outdoor 신발을 포함해서 2005 년에 4.4 백만 켈레가 판매되었고, 약 325 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런 성장세는 2008 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액 규모로는 약 343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스위스 시장조사 연구소는 예측했다.

식료품에 대한 수요는 경제 사이클의 변동과 그다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형 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요는 대체로 포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유기식품, 즉석식품 등 특별한 품목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05 년 독일계 체인점 Aldi 가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스위스 시장 점유를 목표로 오픈 하였으나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기존 사장을 선점하고 있는 Migros, Coop 의 총 마진 감소 추세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여진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쇼핑 사업 확대인데, 기존 Migros 의 LeShop 에 대항 하기 위해 Coop 사도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4) 관광, 호텔산업

2006 년 스위스 관광 수입은 아시아와 동유럽권 관광객 등의 해외 수요 증가 추세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산업에 대한 수요는 대다수의 관광객이 추구하는 저렴한 가격의 수요와 아직 적은 수요지만 증가 추세에 있는 고가, 고품질의 관광 수요의 2 가지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다.

호텔 외식업 산업은 포화상태이며 새로운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도 부족하여 주요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한 해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지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 서비스에 대한 수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비즈니스 서비스

법률서비스 분야가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 영역에서 수요가 증대를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위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상속, 인계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스위스의 개방화된 경제 구조와 해외, 국제법에 대한 방대한 양과 전문 지식의 필수성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를 창출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회계감사 의무는 회계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직결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개정된 회계법이 2007 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으로 회계 서비스에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고객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서비스의 방향이 One-stop 을 추구함 따라 소규모의 회사는 연합, 인수, 합병 등의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05-2006 년 산업별 트렌드

산 업	생 산		가 격		수 익		소 득		고 용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음식	→	→	→	→	→	→	→	→	→	→
섬유	↘	↘	→	→	↘	↘	↘	↘	↘	↘
의류	↗	→	→	→	↗	→	↗	→	↘	↘
가죽/신발	↘	→	→	→	↘	→	↘	→	↗	→
목재	↗	→	→	→	↗	→	↗	→	→	→
제지	↘	→	→	→	↘	→	↘	→	↘	↘
인쇄	→	→	→	→	→	→	→	→	↘	↘
화학/제약	↗	↗	→	→	↗	↗	↗	↗	→	→
플라스틱	↗	→	↗	→	↗	↗	↗	↗	→	→
광물질	↗	→	↗	→	↗	→	↗	→	→	→
금속원료	→	↗	↗	↗	→	↗	→	↗	→	→
금속제품	→	↗	↗	→	↗	↗	→	↗	→	→
기계	→	→	→	→	→	↗	↗	↗	→	↗
전기	→	↗	↗	→	→	↗	↗	↗	↘	→
전자	↗	↗	→	→	↗	↗	↗	↗	↗	↗
정밀기계/시계	↗	↗	→	→	↗	↗	↗	↗	→	↗
에너지	→	→	↘	↘	→	→	→	→	↘	→
건설	↗	→	↗	→	↗	→	→	→	→	↘
자동차	→	→	→	↘	→	→	→	→	→	→
도매			→	→	→	↗	→	↗	→	→
소매			→	↘	→	→	→	→	↘	→
호텔/외식			→	→	→	→	→	→	↘	→
은행			→	→	↗	↗	↗	↗	→	→
보험			→	→	→	→	→	→	↘	→
부동산			↗	→	→	→	↗	→	↗	→
비즈니스서비스			→	↗	↗	↗	↗	↗	↗	↗
건강/의료			→	→	↗	↗	↗	↗	↗	→

자료원 : Credit Suisse

주 : 기호 설명 : ↗ > 2%, ↘ < -2%, -2% ≤ → ≤ 2%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스위스 정부기관

- 스위스연방정부(Authorities of the Swiss Confederation)
 - www.admin.ch
- 스위스연방 경제부(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EVD)
 - www.evd.admin.ch
- 스위스연방 외교부(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EDA)
 - www.eda.admin.ch
- 스위스경제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 www.seco-admin.ch

- 스위스연방 조세부(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SFTA)
 - www.estv.admin.ch
- 스위스연방 상업등기소(Federal Commercial Registry Office)
 - www.zefix.admin.ch
- 스위스연방 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www.statistik.admin.ch
- 스위스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Administration)
 - www.zoll.admin.ch
- 스위스연방 인가청(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
 - www.sas.admin.ch

나. 스위스 산업 및 무역 단체

- 스위스 무역 및 산업 연합회 (Swiss Federation of Commerce and Industry: VORORTt)
 - www.vorort.ch
- 스위스 무역 진흥회(Swiss Export & Trade: OSEC)
 - www.osec.ch
- 스위스 무역진흥조합 (Gesellschaft fuer Foederung der schweizerischen Wirtschaft)
 - www.wf-sdes.ch
- 동남아시아-스위스 상공회의소(Swiss- South East Asia Chamber of Commerce)
 - www.seacc.ch
- 스위스 지역별 상공회의소(Cantonal Chamber of Commerce)
 - www.osec.ch/en/markt/links/link_weitere_kanthk.html
- 스위스 기계.전기.전자.금속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회 (The 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SWISSMEM)
 - www.swissmem.ch
- 스위스 화학산업협회(Swiss Society of Chemical Industries:SSCI or SGCI)
 - www.sgci.ch
- 스위스 시계산업협회(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 www.fhs.ch
- 스위스 섬유산업연합회(Swiss Textile Federation: TVS)
 - www.swisstextiles.ch

- 스위스 플라스틱협회(Swiss Plastics Association : KVS)
 - www.kvs.ch
- 스위스 물류산업협회(Swiss Association of Logistic : SGL or ASL)
 - www.sgl.ch
- 스위스 금속산업 하청협회 (Association of Swiss Metal-Working Industry Subcontractors : SMZ)
 - www.swk.ch
- 스위스 소프트웨어산업협회(Swiss Software Association : swissSOFT)
 - www.swisssoft.org
- 스위스 환경산업협회 (The Swiss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SVUT)
 - www.umwelttechnik-verband.ch
- 스위스 은행연합회(Swiss Bankers Association)
 - www.swissbanking.org
- 스위스 보험연합회(Swiss Insurance Association)
 - www.svv.ch
- 스위스 수입·도매업자 협회(Federation of Swiss Importers and Wholesale-Traders : VSIG)
 - www.vsig.ch

다. 투자,기술협력

- Location : Switzerland
 - www.locationswitzerland.ch
- 취리히 네트워크(The Zurich Network)
 - www.zurichnetwork.ch
- 베른경제개발청(Berne Economic Development Agency: BEDA)
 - <http://gim.net/ch/beda>
- 스위스 해외투자 진흥기관(Swiss Organization for Facilitating Investments: SOFI)
 - www.sofi.ch
- Innonet 기술보육·거래센터
 - www.innonet.ch
- 취리히 테크노파크(Technopark Zurich)
 - www.tpzh.ch

라. 관광, 철도

- 스위스 관광청(Swiss Tourism)
 - www.switzerlandtourism.ch
- 취리히 관광안내(Zurich Tourism)
 - www.zurichtourism.ch
- 스위스 호텔(Swiss Hotels)
 - www.tophotels.ch
- 스위스 항공(Swissair)
 - www.swissair.ch
- 스위스 철도청(SBB)
 - www.sbb.ch

마. 신문, 경제잡지

- NZZ (Neue Züricher Zeitung-일간)
 - www.nzz.ch
- Tages Anzeiger (일간)
 - www.tages-anzeiger.ch
- Handelszeitung (경제전문주간지)
 - www.handeszeitung.ch
- CASH (월 2-3 회 발간되는 일반인용 경제지)
 - www.cash.ch
- Bilanz (격주)
 - www.bilanz.ch

바. 방 송

- SFdrs online
 - www.sfdrs.ch
- Swissinfo(Official Journal of Switzerland)
 - www.swissinfo.ch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스위스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3 년	2004	2005
인구(천명)	7,409	7,456	7,502
GDP (US\$억)	3,140	3,588	3,668
1 인당 GDP (US\$)	42,382	48,123	48,889
실질 GDP 성장률(%)	-0.3	2.1	1.9
수출 (US\$억)	1,007	1,178	1,260
수입 (US\$억)	956	1,103	1,197
무역수지 (US\$억)	51	75	63
물가 상승률 (%)	0.6	0.8	1.2
실업률 (%)	3.8	3.9	3.8
이자율(3 개월 IBOR,%)	0.3	0.7	1.0
대한 수입 (US\$억)	4.33	5.14	5.76
대한 수출 (US\$억)	14.42	12.11	11.68
대스위스 무역수지(US\$억)	-10.09	-6.97	-5.92
대한투자 (US\$백만)	21	70	40
연간평균환율 (CHF/US\$)	1.3453	1.2417	1.2458

자료원 1 : 스위스 경제지표 - 스위스통계청, 스위스관세청

자료원 2 : 한-스위스 무역통계 - 산업자원부

자료원 3 : 스위스의 대한투자 - INVEST KOREA 투자 통계

12. 무역통계

스위스 무역수지 현황

(단위: CHF 억)

연 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무역수지
2003	1,306	0.2	1,237	0.5	69
2004	1,417	8.5	1,324	7.0	93
2005	1,514	6.8	1,431	8.1	83
2006(상)	861	11.9	811	11.1	50

자료원: 스위스관세청

스위스 주요 수출입 품목(2005년 기준)

(단위: CHF 백만)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화학	54,668	화학	32,667
2	기계/전자	34,815	기계/전자	29,547
3	시계	12,323	차량	13,380
4	금속	11,600	금속	12,262
5	정밀기기	11,426	농축산	10,903
6	식료품	3,949	연료	9,011
7	플라스틱	3,401	정밀기기/시계/보석	8,907
8	제지	3,387	섬유/의류/신발	8,757
9	섬유	1,979	가죽/고무/플라스틱	5,168
10	의료	1,640	제지	5,030
총계	수출총계	151,455	수입총계	143,159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스위스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CHF 백만)

순위	국명	2003	2004	2005	2006(상)
1	독일	28,059	29,759	30,222	17,136
2	미국	14,885	15,316	16,139	8,801
3	프랑스	11,665	12,825	12,815	7,412
4	이탈리아	11,065	12,254	12,338	7,792
5	영국	6,567	7,505	7,704	4,156
6	스페인	4,715	5,923	6,486	3,470
7	일본	5,398	5,717	5,694	3,031
8	네덜란드	4,377	4,390	5,428	3,039
9	오스트리아	4,426	4,774	5,023	2,940
10	중국	2,460	2,828	3,222	1,755
	수출총계	130,661	141,734	151,455	86,075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스위스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CHF.백만)

순위	국명	2003	2004	2005	2006(상)
1	독일	41,566	45,484	47,605	26,562
2	이탈리아	13,226	15,616	16,079	9,055
3	프랑스	13,387	13,711	13,497	8,037
4	네덜란드	6,015	6,906	7,445	4,081
5	오스트리아	5,419	5,930	6,608	3,801
6	미국	6,518	6,583	6,519	4,209
7	영국	5,223	5,549	6,080	2,978
8	아일랜드	4,787	4,691	5,560	2,547
9	벨기에	3,873	4,170	4,258	2,459
10	스페인	2,751	3,401	3,913	2,138
	총 계	123,777	132,423	143,159	81,064

자료원 : 스위스관세청

한국의 대 스위스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US\$백만)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통관기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3	433	▼3.4	1,442	44.0	-1,009
2004	514	18.6	1,211	▼16.0	- 697
2005	576	12.2	1,168	▼3.5	- 592
2006(상)	447	51.5	585	1.6	- 138

자료원 :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 스위스 주요 수출입 품목(2005년)

(단위 :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217.3	23.4	의약품	122.6	24.2
2	무선전화기	104.9	85.0	금속절삭가공기계	83.6	38.6
3	선박	34.2	-	시계	74.3	13.0
4	칼라 TV	24.6	▼17.7	기타정밀화학원료	55.7	25.7
5	타이어	15.7	27.9	펌프	53.4	10.0
6	보조기억장치	13.1	72.9	동괴 및 스크랩	36.0	▼11.2
7	그림	9.2	930.4	원동기	31.6	▼53.2
8	화물자동차	5.6	2.4	의료용기기	29.7	31.2
9	VCR	5.4	▼7.9	계측기	24.8	9.5
10	의약품	4.4	0.3	금	23.5	▼82.5
총계	수출총계	576.0	12.2	수입총계	1,168.0	▼3.5

자료원 :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 스위스 주요 수출 품목(2006 년 상반기)

(단위 : US\$백만)

순위	수출			수입		
	품 목	금액	증감률(%)	품 목	금 액	증감률(%)
1	금	192.7	13,795.2	의약품	84.0	25.9
2	승용차	101.8	0.8	금속절삭가공기계	41.6	▼9.0
3	그림	33.1	256.6	시계	32.8	▼9.5
4	무선전화기	28.5	▼40.9	펌프	23.4	▼13.7
5	타이어`	9.3	▼8.9	기타정밀화학원료	23.0	▼12.7
6	보조기억장치	5.9	12.4	원동기	21.7	13.0
7	기타잡제품	3.5	4,176.2	의료용기기	18.5	29.4
8	기타정밀화학원료	3.3	74.2	금	11.6	▼43.5
9	칼라 TV	2.9	▼85.8	동광	11.0	57.1
10	축전지	2.8	571.3	기타화학공업제품	11.0	▼4.7
	수출 총계	446.6	51.5	수입 총계	584.9	1.6

자료원 : 산업자원부

13. 투자통계

※ 2006 년 8 월 기준, 스위스 투자통계자료는 2005 년도 자료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임.

스위스의 대외투자 현황

(단위 : CHF.백만)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30,916	12,785	20,795	32,422	65,470
벨기에	-546	2,036	2,634	797	-835
덴마크	-29	69	485	221	-2
독일	5,696	247	304	91	1,670
핀란드	99	-8	16	406	-24
프랑스	-1,582	985	-1,873	3,203	2,148
그리스	167	241	369	108	305
아일랜드	-4,713	175	33	-511	571
이탈리아	1,958	773	-1,877	160	491
룩셈부르크	7,825	-2,557	4,352	-303	1,933
네덜란드	167	1,505	583	3,809	14,385
오스트리아	399	455	595	901	1,101
폴란드	209	-152	117	341	381
포르투갈	270	75	-266	46	-49

스웨덴	-165	3,002	401	739	-2,030
슬로바키아	9	-52	-4	93	-1
스페인	1,382	480	27	460	2,469
체코	274	55	-496	368	660
헝가리	172	28	132	-65	409
영국	769	363	741	4,389	4,147
캐나다	108	307	353	3,140	5,859
미국	9,571	3,336	6,416	5,681	9,660
호주	-66	437	992	1,133	603
일본	741	-481	-165	1,041	1,508
뉴질랜드	22	-7	-54	9	360
남아프리카	54	-238	-243	-73	1,003
싱가포르	-519	1,020	-202	3,688	1,087
홍콩	5	-363	101	-147	669
대만	34	31	45	54	180
태국	206	167	180	120	232
한국	162	26	6	23	638
말레이시아	67	-34	209	-5	175
필리핀	98	-272	-62	-212	763
중국	181	-64	-188	199	673

자료원 : 스위스 연방중앙은행

스위스의 산업별 대외투자 현황

(단위 : CHF.백만)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30,916	12,785	20,795	32,422	65,470
섬유/의류	-279	157	813	-26	161
화학/플라스틱	1,499	2,939	3,238	12,127	10,994
금속/기계	4,797	-343	1,433	1,987	297
전자/에너지/광학/시계	1,788	681	-3,247	851	440
건설	3,588	9,067	4,189	6,740	6,445
교역	1,080	388	-617	1,354	8,754
파이낸싱	8,694	2,635	7,359	1,832	19,191
은행	-794	437	6,176	3,023	8,959
보험	7,493	-573	1,414	3,815	7,785
교통/통신	1,521	-1,383	-540	-47	363

자료원 : 스위스 연방중앙은행

스위스의 대외투자유치(FDI) 현황

(단위 : CHF.백만)

국가명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4,945	9,783	22,224	1,643	18,395
벨기에	169	-266	4807	320	-847
덴마크	1,840	-108	-33	314	777
독일	-1,425	-321	-21	-277	738
프랑스	944	2,685	939	783	1,208
이탈리아	299	410	-96	-2,131	231
룩셈부르크	791	306	314	1,110	-472
네덜란드	7,505	297	6,025	-2,605	5,521
오스트리아	23	105	-9	636	655
스웨덴	-48	189	244	-25	-355
스페인	50	34	29	122	543
영국	1,211	4,726	1,765	-1,716	1,395
캐나다	-454	193	290	-111	-5
미국	3,323	2,883	6,923	6,934	8,439
이스라엘	14	-310	26	33	64
일본	278	-291	-263	-229	-117

자료원 : 스위스 연방중앙은행

스위스의 산업별 대외투자유치(FDI) 현황

(단위 : CHF.백만)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4,945	9,783	22,224	1,643	18,395
화학/플라스틱	278	205	2,522	2,588	796
금속/기계	-39	165	1,797	465	243
전자/에너지/광학/시계	-2,435	264	1,953	706	-328
건설	472	38	378	-324	17
교역	572	1,624	4,409	983	2,118
파이낸싱	5,513	8,090	9,012	-3,751	12,010
은행	2,545	502	733	204	1,076
보험	1,721	-1,461	467	-98	309
교통/통신	6,177	-57	807	-260	

자료원 : 스위스 연방중앙은행

한-스위스 투자통계

(단위 : 건수, US\$백만)

구 분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우리나라진출	1	0.01	1	2.43	4	3.13

(단위 : 건수, US\$백만)

구 분	2004		2005		2006(8월 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우리나라유치	N/A	70	N/A	40	N/A	217

자료원 : 수출입은행, INVEST KOREA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특성

연평균 섭씨 9도이며, 춘하추동 4 계절이 있으나 계절별 기온차가 적어 비교적 온난한 날씨이다. 예전에는 가장 더운 7 월 중 평균온도가 섭씨 18 도, 가장 추운 1 월 중 평균 기온은 0 도에 불과하여 여름철에도 에어컨의 도움 없이 생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구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후의 현상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40 도까지 치솟아 2003 년의 경우 여름에는 에어컨 품귀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5 년도 여름의 경우 30 도를 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으나 습하지 않아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알프스 산악지역은 겨울철 높은 적설량을 보이며, 산악지형인 관계로 편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기후가 자주 바뀐다.

나. 출장 시 추천복장

시내지역은 한겨울에도 그다지 춥지 않고 한여름에도 기온이 우려할 정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 산악지역은 한여름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어 산악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융프라우 등 유명 산악지를 방문할 경우, 노약자 및 유아를 대동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함)

주요 도시 월별 기온분포

도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네바	-2.6 3.7	-1.5 5.9	0.1 9.8	3.0 13.9	6.9 18.4	10.0 22.2	11.9 25.3	11.3 24.4	8.6 20.8	5.2 14.9	1.1 8.4	-1.5 4.5
인터라켄	4.3 2.3	-3.0 4.5	0.6 8.7	2.6 12.8	6.6 17.4	9.7 20.5	11.7 22.9	11.2 21.9	8.6 18.9	4.5 13.8	-0.2 7.3	-3.0 3.1
로잔	0.7 3.5	0.3 5.2	2.5 8.7	5.4 13.0	9.3 17.3	12.4 21.1	14.7 24.2	14.2 23.1	11.7 19.5	8.1 14.1	3.3 7.9	0.3 4.3
루체른	-2.6 2.8	-1.4 4.8	0.7 9.2	3.9 13.3	7.9 17.9	11.0 20.9	13.1 23.5	12.6 22.6	10.0 19.3	6.1 13.7	1.5 7.5	-1.4 3.8
루가노	0.1 6.0	1.5 4.0	-2.6 11.6	7.3 14.9	10.9 18.8	14.1 23.0	16.8 25.8	16.1 24.8	13.3 21.3	9.2 16.5	4.3 10.8	1.5 7.1
체르마트	-8.0 5.0	-7.0 7.0	-7.0 10.0	-2.0 13.0	2.0 14.0	6.0 17.0	9.0 23.0	7.0 19.0	6.0 16.0	0.0 9.0	-3.0 6.0	-7.0 2.0
취리히	-2.6 2.1	-1.7 4.3	0.8 8.4	3.9 12.6	7.9 17.4	11.0 20.6	13.0 23.0	12.9 22.1	10.2 18.9	6.4 13.4	1.6 7.0	-1.7 3.1

자료원 : 스위스관광청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8 시간으로서 한국이 17:00 이면 스위스는 09:00 가 된다. 단 하계기간(3 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10 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에는 서머타임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가 7 시간으로 짧아진다. 즉, 한국이 16:00 이면 스위스는 09:00 시가 된다.

나.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평일은 08:00 ~ 17:00 근무가 보편화 되어있으며, 일부 기업은 7:00 시 혹은 7:30 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토요일에는 일반 상점을 제외하고 사무실은 휴무하며, 일반 상점의 토요일 개점시간은 08:00 시부터 16:30 시까지 이다. 일요일에는 모든 상점 및 사무실이 휴무한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많은 기차역 근처의 상점은 일요일에도 개점을 하며, 공항, 역 대합실 등 일부는 밤늦은 시간에도 개점하는 상점이 있다.

다. 회계연도

스위스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다.

3. 도량형

스위스도 유럽 여타 국가와 동일한 미터법(m)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게 단위도 킬로그램(kg)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인이 현지에서 도량형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우리나라와 스위스간에는 1979 년 6 월에 체결된 일반사증면제 협정에 의해 3 개월(90 일) 미만 체류 시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그러나, 3 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각 주정부 및 외사 담당 경찰서 등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득해야만 체류가 가능하다.

3 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신청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입국대상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소정의 비자 신청서, 체류목적명세서, 근무처확인서, 체재비용 부담에 관한 증빙서(고용계약서), 세금납부증명서, 무범죄경력 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다. 비자 획득 기간은 본국 조회절차를 거치며 최소 2 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나. 비자발급처

- 발급처 : 주한 스위스대사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10
- 전 화 : 02-739-9511/4
- 팩 스 : 02-737-9392
- 홈페이지 : http://www.eda.admin.ch/seoul_emb/e/home.html
- 이메일 : swissemb@seo.rep.admin.ch
- 휴 일 : 토, 일요일, 양국국경일
- 주 의 : 평일에도 비자발급 영사업무는 오전 중에 주로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을 요구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에 대사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방문하는 것이 필요함

다. 출입국 절차

여권 및 비자확인만 할 뿐 통관절차는 지극히 간소하며 세관신고는 자기신고를 위주로 하고 있다. 공항 통관대에는 붉은등과 푸른등이 켜있는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붉은등 쪽은 세관 신고가 필요한 입국자의 통관대이며 특별히 세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푸른등 통관대를 이용하면 된다. 대형 종이박스를 반입할 경우 세관의 검색이 자주 있는 편이다.

라. 면세품 보유한도

- 담 배 200 개비
- 알코올 15% 초과 주류: 1 리터(알코올 15% 까지: 2 리터)
- 선물용품 300 스위스프랑 이내

마. 출입국 유의사항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푸른등 통관대에서도 가끔 입국자 별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 입국자는 붉은등 통관대를 이용해야 한다. 입국 시 특별한 예방접종 확인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천연두 감염지역에서 오는 경우에는 국제 천연두 접종 확인서가 필요하다. 출국 시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기념품으로 구입하는 경우, 기내 휴대반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부치는 짐에 넣어두어야 한다.

바. 공항 - 시내 이동

취리히 공항(Zurich Airport)에서 시내로의 이동 방법은 기차의 경우 공항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기차, 버스는 5 프랑, 택시는 45 프랑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제네바 공항(Geneva Airport)에서 시내로의 이동 방법은 기차의 경우 공항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기차, 버스는 5 프랑, 택시는 30 프랑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바젤(Basel Airport)의 경우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버스 5 프랑, 택시 30 프랑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스위스프랑으로서 약칭은 CHF 이며, 1 스위스 프랑은 100 Rappen(라펜)이다. 주화에는 5, 10, 20 Rappen, 1/2, 1, 2, 5 CHF 등이 있으며, 지폐에는 10, 20, 50, 100, 200, 1000 CHF 이 있다.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나, 유로화는 슈퍼 및 관광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로화로 지불할 경우 거스름 돈은 스위스 프랑으로 받게 되고 환율도 좋지 않으니,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소액은 스위스 프랑화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다.

나. 환율

미 달러화 대비 스위스프랑화 환율은 98 년 10 월 8 일의 경우 84 년 이래 최고 강세를 보여 1 달러당 1.27 스위스프랑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안정적인 환율 추세가 지속되면서 2001 년 6 월 29 일의 경우 미화 1 달러당 환율은 1.79 스위스 프랑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전 전후 세계정세의 불안으로 스위스 프랑화가 대 달러 강세를 지속하면서 2004 년 평균환율은 US\$1=CHF1.2417 를 기록하였고 2005 년도 평균환율은 US\$1=CHF 1.2458 을 기록했다.

- 1US\$ = 1.2458CHF (2005 년 평균환율)
- 1CHF = 823.13 원 (2005 년 평균환율)
- ※ 2006 년 8 월 31 일 매매기준율 1CHF = 798.94 원

다. 환전

공항 및 기차역, 시내 중심가 등 주요 지역에 은행이 있어 손쉽게 환전이 가능하며, 호텔에서 환전이 가능하나 통상 6-10% 정도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므로 가급적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은행을 통해서 환전할 때에는 환전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라.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기는 하나 상점에 따라서 취급하는 카드에 차이가 있는 편으로 가장 많은 사용되는 카드는 마스터, 비자, 다이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임.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 연락번호는 아래와 같음

- 비자카드 : 0800 89 47 32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 0800 25 52 00
- 다이너스 클럽 : 01 835 45 45
- 마스터 카드 : 0800 89 70 92

6. 물가정보

□ 도시 : 취리히(스위스)			- 환율 : US\$1 = SFr1.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1,219.51	7.1	구두(1켤레, 소가족)	325.2
1.2	넥타이(1개, 실크100%)	79.67	7.2	치약(150g, 1개)	3.98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121.95	7.3	칫솔(1개)	3.98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17.89	7.4	면도기(1세트)	12.93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626.02	7.5	건전지(1세트, 1.5V AA)	3.66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32.52	7.6	화장지(1통, 300매)	2.85
1.7	청바지(Levi's)	121.95	7.7	비누(1개)	1.63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58.54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07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4.63	8.2	볼펜(12개)	9.76
2.3	닭고기(1KG, 생닭)	8.94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4.88
2.4	쌀(1KG,Short Grain)	3.25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3.78
2.5	밀가루(1KG)	1.38	8.5	휴대폰(범용형)	283.74
2.6	설탕(1KG, 백설탕)	1.22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20.33
2.7	계란(10개)	4.07	8.7	인터넷가설비 (1회최초, 1회설치)	79.67
2.8	감자(1KG, 현지산)	1.8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39.84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0.93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24,390.24
3.1	고추장(1Kg)	12.2	9.2	엔진오일(1L)	8.13
3.2	된장(1Kg)	6.1	9.3	휘발유(1L)	1.33
3.3	라면(1개)	1.3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46.34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31.71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382.11
3.5	불고기(1인분, 200g)	30.89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24.39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31.71	10.2	시내버스(1구간)	3.09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4.88
4.1	햄버거(1개)	5.61	10.4	택시(추가요금/Km)	2.85

4.2	피자(1판)	29.19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1.22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203.25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6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0.33
4.5	담배(수입산, 1갑)	4.88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
4.6	위스키(1병, 750ml)	36.59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28
4.7	커피(1병, 175g)	11.95	11.5	국제전화 (현지-서울, 3분, 평상)	0.61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69
5.1	[임차]중급아파트(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3,252.03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1.14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4,065.04	11.8	특급우편(DHL, 1개, 1Kg이하, 현지-서울)	116.1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2%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6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5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7
6.1	TV(29인치, 칼라, 범용)	813.01			
6.2	VTR(6헤드, 범용)	284.55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203.25			
6.4	전자레인지	203.2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975.61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528.46			

□ 도시 : 취리히(스위스)			- 환율 : US\$1 = SFr1.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40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2,439.02
12.2	외국인학교 (등록금, American School)	406.5	18.2	상여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1%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1,138.21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0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3,008.13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4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4,634.15	18.6	연간국경일	9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 (비회원, 18홀, 1라운드)	97.65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 일 수	-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4,959.35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5시간이하
13.3	골프공(1타)	48.78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09.76	19.1	법정최저자금	81,300.81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4.39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3,532.03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2.2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

				(법인세)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 (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8,130.08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1.5~15.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97.56			
14.4	치과(스켈링, 1회)	121.95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5.89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25.2			
15.2	한국신문(1개월)	-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24.39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5.61			
	16. 호텔				
16.1	특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88.62			
16.2	특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15.45			
16.3	중급호텔 (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58.54			
16.4	중급호텔 (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1.95			
16.5	조식 (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29			
16.6	조식 (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2.2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5,284.55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4,471.54			

7. 교통/통신

가. 공항 및 항구

스위스에는 취리히(Kloten)와 제네바(Cointrin), 바젤(Mulhouse)에 3 개 국제공항이 있음.
내륙국으로서 국제항구는 없으며, 바젤이 유일한 내수로 항구임.

나. 스위스-한국 운항정보

○ 직항편

- 대한 항공에서 인천-취리히 구간을 하계(4-10 월) 3 회(화, 목, 토), 동계(11-3 월) 2 회(화, 토) 운항 : www.koreanair.co.kr

- 유럽 항공 경유편
 - Air France(매일) : www.airfrance.co.kr
 - Alitalia(수, 금, 일) : www.alitaliakorea.com
 - Emirates Airline(화, 목, 금, 토, 일) : www.emirates.com/korea/kr
 - KLM(매일) : www.klm.co.kr
 - Lufthansa(매일) : www.lufthansa-korea.com
- 아시아 항공 경유편
 - Japan Airline(월, 화, 수, 금, 토, 일) : www.jal.co.kr
 - Singapore Airline(월, 화, 금, 토, 일) : www.singaporeair.com/kr
 - Thai Airways INT' s(매일) : www.thaiair.co.kr
- 스위스 내 항공권 가격 비교 및 구매 정보 : www.ebookers.ch

다. 시내 대중교통

시내교통 수단으로서는 버스, 전차, 내수교통용 보트 및 우체국에서 운행하는 버스 등이 있음.

버스 및 전차는 자동티켓 판매대에서 승차 전에 티켓을 구입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30 분 용(5 정거장내 유효, 2.40 CHF), 1 시간용(3.80 CHF), 24 시간용(7.60 CHF) 티켓이 있으며, 동일한 티켓으로 버스와 전차, 보트 등 대중교통 수단을 공히 사용할 수 있음.

유의사항은 승.하차 시 검표를 하지 않고 승객의 자율의사에 맡기나, 수시로 검표요원에 의한 불시 점검이 있으며 적발 시 80 CHF의 벌과금 및 기타 업무비용이 부과됨.

라. 택시

택시의 경우 회사별, 택시종류(공항, 일반)별, 도시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 요금이 5-7 스위스 프랑이며, Km 당 3-4 프랑이 추가됨. 승객수와 소지물품의 양에 따라 요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시간 1 시간에 대해 50 스위스 프랑이 요구됨.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 되어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탑승할 수 있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함.

마. 철도

철도교통에 있어 스위스는 거의 전철화 되어있는 총 5 천킬로미터의 철도노선과 1,800 개의 역을 구비하여 유럽 내에서도 가장 잘 정비된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음. 이중 주요 산악 철도를 포함, 약 2 천킬로미터의 사설철도는 약 100 개에 달하는 사설철도회사가 운영하고 있음. 스위스 국민의 철도이용은 1 인당 연간 1,600 킬로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스위스의 철도교통은 시간이 정확하고 안락함이 주된 특징임.

대부분 기차는 1 등칸 및 2 등칸으로 나뉘며 기차 종류별(정차 빈도 별)로 지방철도(local train; Regionalzug), 급행(fast trains; Schnellzug), 도시간 철도(Intercity; IC), 유로 철도(Eurocity; EC)로 구분됨. (기차표는 굳이 1 등칸을 구입할 필요 없음)

시속 300Km 의 TGV 프랑스고속철도가 매일 베른, 제네바, 로잔, 노이샬에서 파리로 운행하고 있으며, 제네바-파리간을 3 시간반에 연결하고 있음. Intercity 차편은 스위스 주요

도시간 운행하는 급행 열차편이며 Eurocity 차편은 유럽 200 개 주요도시와 스위스 도시를 잇는 국제 열차편 임.

최근 스위스는 철도망 근대화 및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로 90 년부터 취리히에서 운영하고 있는 S-Bahn suburban train 서비스를 꼽을 수 있는데, 동 열차 편에는 13 억 CHF 을 투자하였으며 1 일 약 20 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스위스의 철도청(SBB)은 서비스가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철도여행객을 위해 유럽 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패키지형 철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고객유치에 적극적임. 스위스 철도청의 홈페이지(www.sbb.ch, 영문지원)를 접속하면 열차편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함.

바. 국내통신

전화요금은 한국보다 상당히 비싸 60 라펜이 기본이며, 사용 시간대에 따라 차별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반 요율 적용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경우 06:00 ~ 13:00 시간대이며 평일의 그 외 시간대 및 토요일과 일요일은 할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시내 곳곳에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전화 사용에는 별문제가 없으며, 공중 전화기는 동전 투입식과 카드식 2 종류가 있으나, 카드식 종류의 공중전화기가 일반적 이라는 점에서 SWISSCOM 에서 발행하는 전화카드(5, 10, 20 프랑 등)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편이 효율적임. 특이한 사항은 국내전화를 걸 경우에도 지역번호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는 점으로, 취리히(지역번호 01)에 사는 사람이 취리히 내 지역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도 반드시 '044' 를 먼저 입력해야 함.

스위스 내 대부분 공중전화는 국제전화가 가능함. 전화번호 안내는 국내전화 111, 국제전화 안내 191 임. 단, 독일 및 오스트리아 지역안내는 192 로 문의해야 하며, 프랑스지역은 193 으로 문의해야 함.

사. 국제통신

통신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어 국제통화에도 별 문제가 없다. 한국과 스위스간 국제전화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됨

- 스위스에서 서울로:
 - 00 (국제전화호출), 82 (한국), 지역번호(최초의 0 은 불필요), 수화자 번호
 - Ex) 서울 987-6543 전화할 경우: 00-82-2-987-6543
- 한국에서 스위스로:
 - 001 또는 002(국제전화호출), 41(스위스), 지역번호(최초의 0 은 불필요)순
 - Ex) 취리히 01/ 456-7890 전화할 경우: 001 (또는 002)-41-1-456-7890
- Collect Call (수신자 부담 요금)
 - DACOM: 0800-56-3671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KT: 080-055-7667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선불카드

- DACOM: 0800-563671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카드번호 및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 KT: 080-055-7667 (접속 전화번호)
 - 접속전화번호를 돌린 다음 나오는 안내방송에 따라 2 번을 누르면 전화번호를 누르면 됨

아. 우편제도

스위스의 우편, 체신제도는 여타 유럽선진국과 같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국영인 스위스 체신청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스위스의 일반우편은 A-Post 와 B-Post 2 종으로 구분되며, 국내의 경우 A-Post 는 발송 하루만에 B-Post 는 2~3 일만에 배달됨. Post 인 경우 스위스-유럽간 우편 소요일수는 약 2-5 일, 여타 지역으로 발송 시에는 약 4-10 일정도 소요됨. 더욱 빨리 우편물을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Express mail 을 이용하면 됨.

소포의 경우 air mail, 보통(선편; surface mail)또는 두가지의 복합방식인 surface air lifted(SAL) packet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음. 소포 air mail 은 일반우편물의 air mail 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며, SAL 방식은 유럽 이외 지역으로 송부되는 소포를 항공편으로 우송한 후 도착지에서는 보통의 육상운송 배달방식으로 배달되는 것으로 원격지 국가에도 10-25 일 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음.

(자료원: 취리히 무역관 자료종합(2006 년 8 월))

8. 호텔/식당**가. 호텔**

스위스의 호텔은 www.tophotels.ch를 통하여, 자신의 수요 및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호텔들에 대한 정보의 검색 및 예약이 가능하며, 취리히 지역은 취리히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 (<http://www.zuerich.com>)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하다. 전화로 예약이 매우 간편하여 이를 적극 추천한다.

호텔요금은 매우 비싼 편으로서 5 Star Hotel 싱글룸의 경우 US\$260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3 Star Hotel 의 경우 무역관 할인요금을 적용해도 싱글룸 기준 US\$100 이상이다. 통상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것이, 스위스 현지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며 가격은 시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격 수준은 아래와 같다.

취리히무역관 홈페이지 좌측 배너 “호텔-통역 예약정보”에 여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호텔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가격(\$)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 1 박, 시내중심지)	288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 1 박, 시내중심지)	215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 1 박, 시내중심지)	158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 1 박, 시내중심지)	121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8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2

취리히지역

5 Star 호텔	
Baur au Lac	044-220-5020 Talstr. 1, 8022 Zurich www.bauraulac.ch
Dolder Grand	044-251-6231 Kurhausstr. 65, 8032 Zurich www.hoteldolder.ch
Hilton Int'l	044-810-3131 Hohenbühlstr. 10, 8058 Zurich-Glattbrugg www.hilton.com
Marriott	044-363-6363 Neumühlequai 42, 8001 Zurich www.marriott.com/property/propertytype.mi?marshaCode=ZRHDT
4 Star 호텔	
Ambassador	044-261-7600 Falkenst. 6, 8008 Zurich www.ambassadorhotel.ch
Dolder Waldhaus	044-251-9360 Kunsthausstr. 20, 8030 Zurich www.dolderwaldhaus.ch
Intercontinental	044-404-4444 Badenerstrasse 420, 8040 Zurich www.ichotelsgroup.com/h/d/ic/1/en/home
3 Star 호텔	
Leoneck	044-254-2222 Leonhardtstr.1 8001 Zurich www.leoneck.ch

제네바지역

5 Star 호텔	
Hotel Intercontinental	022-919-3939 Ch.Petit-Saconnex 7-9, 1211 Geneva
Hotel des Bergues	022-731-5050 q. Bergues 33, 1211 Gene
De la Paix	022) 732 6150 11 quai du Mont-Blanc
4 Star 호텔	
Hotel Ambassador	022) 731 7200 q. Bergues 21-pl Chevelu 1-3, 1211 Geneva
Movenpick	022-798-7575 r. de Pre-Bois 29

로잔지역

5 Star 호텔	
Beau Rivage Palace	021-613-3333 1006 Ouchy-Lausanne
Lausanne Palace	021-331-3131 Grand Chene 7-9
4 Star 호텔	
Chateau d'Ouchy	021-616-7451 pl. du Port 2
Mirabeau	021-320-6231 av. du la Gare 31

베른지역

5 Star 호텔	
Bellevue Palace	031-320-4545 Kochergasse 3
Schweizerhof	031-311-4501 Bahnhofplatz 11
4 Star 호텔	
Ambassador	031-370-9999 Seftigenstr. 97 - 99
Bern	031-312-1021 Zeughausgasse 9

바젤지역

5 Star 호텔	
Basel Hilton	061-271-6622 Aeschengraben 31
Swissotel Basel Le Plaza	061-692-3333 Am Messeplatz 25Bahnhofplatz 11
4 Star 호텔	
Basel	061-264-6800 Munzgasse 12
Drachen	061-272-9090 Aeschenvorstadt 24

나. 한식

한식의 경우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40 프랑 정도가 소요되며 저녁 뷔페의 경우 50-60 프랑 정도의 비용이 요구된다.

- 고려정 (Korea Pavillion)
 - Badenerstrasse 457, Zurich
 - Tel: 044) 492-3332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Paradeplatz 하차 후, 2 번으로 갈아탄 다음, Letzigraben 역 하차(총 30 분 소요)
- 대나무집(Bambushain)
 - Vogelsangstr. 33, 8006, Zurich
 - Tel: 044) 363-2228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10 번 탑승 후, Winkelriedstrasse 에서 하차(총 20 분 소요)
- 유미하나(Yumihana) : 한국식품점 및 Take-out 점
 - Schuetzengasse7, 8001 Zurich
 - Tel: 044) 750-5161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Bahnhofstrasse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후 첫 번째 골목 좌회전(총 도보 3 분)

다. 중식

중식의 경우 메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40 프랑 정도가 소요됨.

- China Garden
 - Schuetzengasse 12, 8001 Zurich
 - Tel: 044) 211-7100, Fax: 044) 211-3561
 - Homepage: www.china-garden.ch
 - Email: Vivian.cham@china-garden.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도보로 5 분
- Suan Long (시내위치)
 - Selanuerstrasse 32, 8001 Zurich
 - Tel: 044) 242-1168
 - Fax 및 Homepage: 없음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Paradeplatz 하차 후, 8 번으로 갈아탄 다음, Seinau 역 하차(총 13 분 소요)

라. 일식

일식의 경우 스위스 내에서도 비싼 음식에 속해 면류를 제외하고는 통상 40-50 프랑정도가 소요됨.

- Restaurant Takano
 - Uetlibergstr.166, 8045 Zurich
 - Tel: 044) 463-2228, Fax: 044) 461-7554
 - Homepage: www.takano.ch, Email : eat@takano.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13 번 탑승 후, Waffenplatz 역에서 하차(총 20 분 소요)
- Fujiya of Japan
 - Tessinerplatz 5, 8002 Zurich
 - Tel: 044) 208-1555, Fax: 044) 208-1420
 - Homepage: www.fujiya.ch, Email : info@ascot.ch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Bahnhof Enge 역에서 하차 (총 15 분 소요)

마. 스위스 전통음식

- Zeughauskeller
 - Bahnhofstrasse 28a, Zurich
 - Tel: 044) 211-2690, Fax: N/A
 - Homepage: www.zeughauskeller.ch, Email : zeughauskeller@bluewin.ch
 - 주메뉴: 소시지, 스테이크, 구운 감자, 전통 맥주
 - 전세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계로, 한국어로 된 식단표도 구비하고 있음.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6 번(또는 7 번, 13 번)을 타고 Paradeplatz 하차
- Restaurant Swiss Chuchi
 - Hotel Alder, Rosengasse 10, 8001 Zurich
 - Tel: 044) 266-9696, Fax: 044) 266-9669
 - Homepage: www.restaurant-swiss-chuchi.ch
 - Email: info@hotel-alder.ch
 - 주메뉴: фонд뤼, 라클렛
 - 찾아가는 법: 중앙역에서 전차 4 번을 타고 Rathaus 하차한 뒤, 도보로 4 분

바. 현지 고유음식

스위스 고유의 대표적인 음식에는 фонд뤼와 라클렛이 있다. фонд뤼는 가마솥 같이 생긴 그릇에 치즈를 녹여 빵을 찍어먹는 것으로서 겨울철에 주로 많이 먹으며 치즈종류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다. 라클렛은 치즈를 녹여서 구운 감자에 덮여 먹는 것으로서 라클렛용 치즈의 종류가 다양하다.

9. 관공서 관행

업무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나, 양질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민 업무를 처리한다.

뇌물은 통용되지 않는 대신, 관공서에 서비스 요청 시 거의 모든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 크리스마스 이후 1 월초 까지는 업무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서 12 월초 이전까지 끝내는 것이 좋다.

10. 공휴일

가. 휴일 지정방식

스위스는 연방정부에서 지정된 공휴일과 각 주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나뉘어진다. 연방정부 공휴일은 모든 주 정부에 걸쳐 공휴일로 인정되며, 주정부 공휴일은 해당 주 정부에서만 공휴일이 인정된다. 아래 공휴일은 취리히 주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나머지 25 개 주에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공휴일이 1 년에 1-2 일정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006 년 스위스 공휴일(취리히 주의 경우)>

- 신년 (Neujahr): 1. 1 - 2
- 부활절 연휴 (Osten): 4. 14 - 17
- Sechselaeuten(젝세로이텐): 4. 24(16 시까지 근무)
- 노동절 (Tag der Arbeit): 5. 1
- 예수 승천일 (Auffahrt): 5. 24(16 시까지 근무) - 25
- 강림절 월요일 (Pfingsten): 6. 5
- 스위스연방 설립 기념일 (Nationalfeiertag): 8. 1
- Knabenschiessen(크나벤쉬센): 9. 11 (오전만 근무)
- 크리스마스 연휴(Weihnachten): 12. 24(16 시까지 근무) - 26
 - Sechselaeuten(젝세로이텐): 칸톤 취리히에서만 개최되는 봄축제
 - Knabenschiessen(크나벤쉬센): 칸톤 취리히에서만 개최되는 청소년 사격대회
 - 각 주(Kanton)별 종교와 지방문화에 따라 휴일이 더 있을 수 있음

<유럽 국가별 휴일 관련 사이트>

- Feiertagskalender (www.feiertagskalender.ch)
- 유럽국가별로 휴일 정보 수록(휴일유래, 근무시간, 학교방학기간)
- 스위스의 경우 칸톤별(주정부)로 각기 다른 휴일 정보도 수록

나. 출장 지양기간

부활절 전후로 상당수 기업들이 1 주일 휴무에 들어가 이 기간 중 출장 시에는 상담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7 월 1 일부터 9 월말까지 여름 하계기간에는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 비즈니스 비수기이며, 12 월 중순부터 1 월초 까지는 성탄절 연휴로 역시 비즈니스 상담이 어렵다. 또한 각 주 정부 별로 공휴일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출장 전 공휴일 여부를 확인 후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 의복

한국의 날씨와 비슷해 특별한 의복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이에 대비해야 하며, 산악지역은 한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기온이 낮다는 점(여름에도 0 도를 유지)을 감안하여 스위스 방문 중 산악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방한복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전기

220V 전압과 최대 10amp, 50Hz(AC)이며, 플러그는 2-pin, 3-pin 또는 earth socket 방식의 2-pin 을 사용하고 있으며, pin 의 크기는 한국보다 좁은 4mm 직경의 원형이다. 노트북 컴퓨터 등 한국산 전자제품을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규격과 현지규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댑터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 여행여건

□ 치안

정치.사회.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치안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최근 동구권 등 외국 난민의 유입 증가로 도난사건 등 범죄발생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2002 년 이후 공항, 호텔로비 앞, 카페 등에서 가방 또는 소지품을 분실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로 집 보험에 가입한 경우, 도난시에는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후에 분실금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택시

회사별, 택시종류 (공항, 일반) 별, 도시 별로 요금이 달리 운영되나 기본요금이 5-7 CHF 이며 Km 당 3-4 CHF 이 추가된다. 시내 주요 지역별로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여 택시를 탈 수 있으며,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 응급

스위스는 병원시설, 의료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긴급처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여행 중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44 를 호출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취리히 시내 24 시간 개점하는 약국은 Theaterstrasse 14 에 소재한 Apotheke(Tel: 044-252-5600)와 취리히역내의 약국이 있다.

□ 팁관행

식당 등에서 팁은 서비스가 좋을 때 10% 이하를 주며 특히 카드지불의 경우 슬립을 가져오면 끝자리를 적당히 맞춰 예를 들어 CHF 61.30 일 때 끝을 CHF 65 로 맞춰 적어 주면 된다.

□ 식수

자연보호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어 수돗물을 식수로 이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석회질이 과다 함유되어 있어 방문자가 현지의 수돗물을 마실 경우 배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쇼핑

□ 물가

일반소비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인근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 현지 소비자들조차 주말을 이용하여 국경의 독일(Konstanz 역 근처 쇼핑 타운), 오스트리아(St. Gallen 근처의 국경지대), 프랑스에 있는 소매점을 이용할 정도로 현지의 물가수준이 높다. 하지만, 식료품의 경우는 그리 높지 않으며 고급 소비용품의 경우는 현저하게 높다.

□ 쇼핑장소

취리히의 경우 유럽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싸다는 Bahnhofstrasse 를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 (Jelmoli, Globud, Manor)을 포함하여 명품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다. 취리히 시내 이외에도 주요 지역별로 쇼핑몰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행객의 경우 한번쯤은 쇼핑거리를 구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 특산품

스위스에는 초콜릿이 유명하며 쇼핑물에는 거의 예외 없이 초콜릿 대리점이 소재하고 있다. 이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민속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는 민속공예품 전문점이 다수 존재하며, 스위스의 전형적인 민속공예품을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은 주요지역에 체인점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HEIMAT-WERK(www.heimatwerk.ch)"라는 전문점을 방문하면 거의 모든 스위스 전통공예품을 구경할 수 있다. 스위스 민속공예품 중 대표적인 제품은 종과 목각 인형을 들 수 있다.

자료원: 취리히무역관 자체취합(2006년 8월)

12. 유용한 연락처

가. 비상연락처

스위스는 병원시설, 의료진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긴급처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 여행 중 비상구호가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44를 호출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번호부에는 의사 등 의료진들의 전화번호가 별도로 명기되어있어 의료 처리를 받을 수 있다.(의료진비는 고액임) 참고로, 취리히 시내 24시간 개점하는 약국은 Theaterstrasse 14 에 소재한 Apotheke 이다. (Tel: 044-252-5600)

나. 한국기관

- 주한 스위스 대사관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 Kalcheggweg 38, CH-3006 Berne, Switzerland
 - Tel: 031-356 2444, Fax : 031-356 2450
 - Homepage: http://www.mofat.go.kr/ek/ek_a003/ek_chch/ek_01.jsp
 - Email: swiss@mofat.go.kr
- 제네바 상주 대표부
 -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Add: 1 Avenue de l' Ariana, Case Postale 42, 1211 Geneva, Switzerland
 - Tel: 022-748 0000, Fax : 022-748 0001
 - Homepage: http://www.mofat.go.kr/ek/ek_a003/ek_gvgv/ek_02.jsp
 - Email: mission.korea-rep@ties.itu.int

(자료원: 취리히 무역관(2006년 8월))

13. 관광명소

알프스를 배경으로 만년설과 호수, 깨끗하고 정결한 도시 및 시골정경, 잘 정비된 교통 및 시설과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스위스는 문화유적 등을 보유한 관광지라기보다는 휴양지로 평가 받고 있다.

주요 관광지는 취리히(Zurich), 루체른(Luzern), 융프라우(Jungfrau), 제네바(Geneva), 체르마트(Zermatt), 생모리츠(St.Moritz), 생갈렌(St.Gallen), 루가노(Lugano), 노이샤텔(Neuchatel) 등 스위스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여행자를 위한 관광안내사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 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스위스를 방문 전 방문 예정 관광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위스 관광청에서는 한글 홈페이지(www.myswitzerland.co.kr)를 운영 중이다.

- 주요 관광지역
 - 취리히지역: 취리히 시가지(Bahnhofstrasse), 취리히호수, 빈터투어(Winterthur)
 - 동북부지역: 생갈렌, 아펜젤
 - 서북부지역: 바젤, 솔로톤, 바덴
 - 베른지역: 베른 시가지, 빌, 에멘탈
 - 베른오버란트: 인터라켄, 툰, 브리엔즈, 알프스산정상(융프라우, 아이거, 뮌히)
 - 중부지역: 루체른 시가지, 루체른호수, 필라투스산, 리기산, 티트리스산 등
 - 그리손즈지역: 쿠어, 엔가딘(생모리츠), 크랑몽타나
 - 티치노지역: 로카르노, 루가노
 - 바라이즈지역: 시온, 마테호른, 체르마트산, 크랑몽타나
 - 제네바지역: 로잔, Vaud Rivier, 제네바 시가지, 레만호수
 - 노이샤텔: 프리브르크, 노이샤텔

(자료원 : 스위스 관광청(www.myswitzerland.co.kr))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교역관련 주요 법규

- Customs law (Zollgesetz): SR 631.0
- Decree regarding the customs law (Verordnung zum Zollgesetz): SR 631.01
- Law on customs tariffs (Zolltarifgesetz): SR 632.10
- Decree regarding tariffs on goods from countries who have an FTA with Switzerland, excepts EU and EFTA (Verordnung über die Zollansätze für Waren im Verkehr mit Staaten, mit denen FTA bestehen, ausgenommen EG und EFTA): SR 632.319
- Decree regarding the issuing of certificates of origin (Verordnung über die Ausstellung von Ursprungsnachweisen): SR 632.411.3

- 교역 관련 법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독어, 불어, 이태리어)
- www.admin.ch/ch/d/sr/sr.html

나. 스위스 경제 사무처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 www.seco.admin.ch
- EFTA 협정에 관한 조약과 자국과의 관계
- 유럽경제협정(EWR)
- 자유무역협정
- OECD
- WTO 조약과 자국과의 관계

다. 유럽연합 법규

- 유럽연합 포탈 사이트(Gateway to the European Union)
- www.europa.eu.int
- 유럽연합법을 관련 포탈 사이트(The portal to European Union Law)
- www.eu.int/eur-lex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 www.europarl.eu.int
- 유럽통합법원(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www.curia.eu.int
- 유럽법률 자료 정보(Dokumente zum europaeischen Recht)
- www.eu-history.info

라. 스위스- 유럽 관계 법규 정보

- Integration Office DFA/DEA
- www.europa.admin.ch
- 1999년 2월 3일, 스위스-유럽연합 관련 통합 규정 발표문 (무역/관세/경제 등 포함)
- www.europa.admin.ch/europapol/off/ri_1999/d/ri.pdf

마. 스위스 법률 조정 관련 연구소 (Schweizerisches Institut fuer Rechtsvergleichung, SIR)

- EU 내/외 대 스위스간의 관련 법률정보 및 법률관련 상담이 가능함.
- 독/불/이태리/영어 제공
- 홈페이지 : www.isdc.ch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스위스는 WTO 발족에 따라 그간 지속해왔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을 더욱 완화하였으며 종전까지 온대지역산 식품류와 농산물에 대해 실시해 왔던 매우 까다로운 3 단계 수입 허가제도(three phase system)를 95 년 WTO 농산물 및 수입협정에 따라 관세화(Tariffication)하면서 종전 수입이 제한 되어 왔던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 개 품목을 관세 할당제(Tariff Quota)로 전환하였음.

스위스의 수입허가제도는 비자동 허가(Non-automatic licensing)와 자동허가 (Automatic licensing)로 구분되는데, 농산물 중 Tariff Quota 대상인 28 개 품목(HS 8 단위 기준으로는 233 개)이 비 자동 허가 대상임.

공산품의 경우 수입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안전(방사선물질, 무기, 폭약), 필수비축 물자(비료, 항생제, 유류, 비누), 보건위생(방사선물질, 마약), 환경보호 (유해폐기물, 야생동물), 칸톤의 독점물품(소금), 포장규제(PVC 병), 식품위생(채소류), 독극물, 동식물 위생 관련 품목 등이 해당됨.

일부 필수품(곡식류 및 식품류, 산업원자재, 연료 또는 탄화수소 등) 수입상은 비상시의 용도를 위해 최소한의 일정 비축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축을 위하여 비용이 추가 되는 경우 수입상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음.

현재 스위스 수입의 15 - 19% 정도가 수량규제, 수입제한 등 수입규제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을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은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버터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2005 년도까지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없음.

나. 수입쿼터

스위스는 자국 농산물의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수입은 수입 규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과일과 농산물에 쿼터를 두고 있으며 시즌에 따라 수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헌법과 관세법에 기초하고 있는 스위스 관세제도는 총 6,863 개의 관세품목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세율은 MFN 관세율, EC 및 EFTA 관세율, 대 개도국 특혜관세율, 최저 개도국 특혜관세율로 구분 적용되고 있음.

1988 년부터 HS 방식에 의한 품목분류체제를 도입하여 총 8 단위 세번으로 HS 6 단위 세번과 스위스 자체설정 끝자리 2 단위 세번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음.

스위스는 선진공업국 중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종량세는 동일한 과세대상 품목군에 있어 고가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고 값싼 제품에 대해 과세율이 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나. 일반특혜관세제도

스위스는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72.3 월에 도입한 후 81 년에 92.2.29 까지 10 년간 연장하였으며, 92 년에 5 년 연장한 후 97 년부터는 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2007 년 까지 10 년간 시행기로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8 년 3 월부터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GSP 의 원산지규정은 당초 UNCTAD 에서 정한 원칙에 준하여 수출국내의 완전 생산품 또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수입원자재등 사용비중이 50% 이하 또는 수입품 원자재와 완제품의 HS 관세분류번호가 변경)을 적용하며 이의 입증자료로서 Form A <우편일 경우는 APR> 증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96 년 7 월부터 공여국 원자재기준이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스위스 내 원자재, 반제품을 사용한 개도국 수출상품의 가공도 산출시 그 원자재, 반제품 사용분을 합산함으로써 개도국의 GSP 수혜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음.(HS 25-97 의 공산품에만 적용)

GSP 공여로 인하여 국내수입시장이 교란될 경우 특정국 또는 당해상품에 GSP 공여를 중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나, GSP 시행 이후 한번도 발동한 적은 없음.

스위스는 '81 년 제정된 일반특혜관세 연방법(Zollpraeferenzen-beschluss)의 시행기간을 2007 년까지 10 년간 연장하고, 한국,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싸이프러스, 아랍에미리트연방,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타르, 바하마, 버뮤다, 카이만제도, 포크랜드 제도 등 13 개국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대만은 당초부터 GSP 수혜대상이 아니었음) 남아공, 에리 트리 아, 가자 및 서안지구, 미크로네시아연맹과 CIS 의 일원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카자흐, 키르기즈,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및 트루메니스탄 공화국 등을 GSP 수혜대상국에 포함시켰음.

다. 원산지 규정

스위스의 원산지규정은 3 가지로서 EU/EFTA 특혜원산지규정과, GSP 원산지규정 및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됨.

EU/EFTA 특혜원산지규정과 GSP 원산지규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품목이거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50%를 충족하거나 또는 HS 세번변경 (4 단위)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특히 EU/EFTA 특혜원산지기준은 94 년 1 월 자유화되어 제 3 국의 반제품 사용한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HS 28-29 류)의 경우 제 3 국 원재료를 40%까지, 플라스틱제품(HS 39 류)의 경우는 25%까지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GSP 특혜원산지규정에서는 블록경제 내에서의 원자재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산지 누적시스템을 인정하고 있으며 ASEAN 국가에 적용하고 있음.

한편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수출국에서의 완전생산품이거나 또는 본질적 변형 (Sufficient Transformation)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 3 국 원산지 재료가 수출가격의 50% 이하이거나 HS 4 단위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원자재와 완제품 간의 본질적 변형으로 간주하고 있음.

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스위스는 관세법 제 7 조에 반덤핑과 상계관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WTO 의 Safeguard 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과 일치하고 있음. 현재까지 스위스에서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조사는 대외경제부 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관세부과 여부는 각료회의에서 결정함.

잠정관세인상(관세법 제 7 조)뿐만 아니라 잠정수입금지조치(대외경제연방법 제 1 조)까지도 발동할 수 있으나 이들 조치는 사후 6 개월 이내에 연방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6 개월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를 연장 또는 종료해야만 함.

현재 발효중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없으며 1974 년도에 백포도주의 수입급증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와 1982 년도에 포도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조치(6 주 후 종료)등 단 2 회에 걸쳐 GATT 19 조의 Safeguard 조치를 발동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않고 있음.

마. 관세할당제 (Tariff Quota)

스위스는 당초 관세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UR 협정 이행을 위해 종전 3 단계 수입 허가 제도(three phase system)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었던 품목을 관세화(tariffication) 하면서 관세할당제를 도입하였음.

스위스는 농산품 과세품목(tariff lines)의 약 15%에 달하는 육류, 사과, 배, 채소, 포도주 등 총 28 개 과세품목에 대해 관세할당제 신설 하였으며, 이중 계절관세 또는 수입금지 적용대상 품목이었던 과일과 야채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가 계절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출관심품목인 사과와 배도 관세 할당품목으로서 연간 Tariff Quota 는 15,800 톤이며 동 Quota 한도 내에서는 100kg 당 포장방식에 따라 2-5 프랑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Quota 를 초과하여 수입시에는 100kg 당 171 프랑의 무거운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바. 수입부과금

커피, 차, 코코아 및 쌀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최저 재고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입 부과금(import charges)을 부과하고 있음. 커피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Sfr 0.18 /kg (수입액 의 약 2% 상당)이다. 한편, 종전에 설탕을 포함한 여타 품목에 대해 부과되던 수입 부과금은 UR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관세로 전환되었음.

스위스의 물품세는 담배, 맥주 및 정류된 주류(distilled beverages)에 대해 부과되고 있으며 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은 96.3 월 EU 와 일치시켜 담배 1 갑당 물품세는 99 년 1 월 부터 0.3 프랑이 인상, 약 CHF 2.17 수준이 되었음.

증류식 주류에 대한 물품세는 99년 6월 1일부터 국내생산과 수입품간 차별없이 리터당 CHF29로 단일화하였음.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유류에 대해서는 재정세(Fiscal Tax)가 부과되고 있는데, 유연유에 대해서만 100Kg 당 CHF48.5의 재정세가 부과되고 있음.

18. 주요인증제도

스위스 표준화 기구인 SNV(Swiss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과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의 회원으로 시장에 소개되는 제품에 대한 법규, 지침, 표준 등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식품과 관련된 많은 품목에 대해 최저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양념류, 품질, 가공,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생산 및 수입 의약품의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범 칸톤 의약품관리국(IKS)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IKS" 허가필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 협회(SEV)의 검사 인증제도가 있다. SEV 검사 인증제도는 의무적 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상기 인증 없이 판매, 유통,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국내반입, 판매 시 연방 전기법에 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스위스 내 표준화 관련 협회

- SNV(Swiss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www.snv.ch (영/독/불어)
- SICTA(Swi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ww.sicta.ch
 - 스위스 telecom provider(hardware, software, integrators) 협회
- electrosuisse(SEV Association for Electrical Engineering, Power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www.electrosuisse.ch
 - 스위스 information, energy, electrical engineering 관련 협회
- SWISSMEM(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www.swissmem.ch
 - 스위스 machine, electrical, metal industry 협회
- sia(Swiss association of engineers and architects): www.sia.ch
 - 스위스 건축, 토목, 환경 관련 전문가를 위한 협회
- VSS(Swiss association of road and transport experts): www.vss.ch
 - 스위스 도시계획, 건설, 교통기반 및 시스템 관련 협회
- NIHS(Federation of Swiss Watch Industry FH): www.nihs.ch
 - 스위스 시계산업 협회

19.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제도 개황

스위스는 WIPO Convention, the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Agreement, the European Patent Convention 등을 포함, 많은 지적소유권 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있음.

스위스는 첨단기술분야가 고도로 발달된 국가특성상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국제 규범을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스위스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취리히 무역관에서 2000 년 이후 매년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나. 상표권

스위스의 상표등록 제도와 관련된 법규로는 상표보호 연방법이 있다. 상표 등록 시 유효 기간은 10 년이며 이후 추가로 10 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등록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상표 등록 만료일 12 개월 전부터 상표등록 만료일까지 기간 중 연장신청을 해야 함.

스위스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등록을 한 자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동 사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 상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소요건은 구체적인 조건이 사전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스위스 법 상 등록단계에서는 유사상표의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기관도 이를 사전 심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있는 경우 지적소유권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음.

상표권 출원 등록 시 변호사 수수료는 CHF 1,500 수준(US\$ 1,035 수준)이며 스위스 및 EU 국가의 상표등록 및 검색수수료는 CHF 700(US\$ 483 수준)임.

다. 의장권

의장권은 최대 15 년간(5 년씩 연속 3 회) 보호받을 수 있음.

라. 특허권

1954 년 6 월 제정된 스위스 연방특허법(Patentgesetz, PatG)에 의해서 특허권은 20 년간 보호될 수 있으며 갱신이 불가능함.

마.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 스위스 연방 지적재산권 연구소 (Eidgenössisches Institut fuer Geistiges Eigentum, IGE)
 - 1988 년 특허, 상표(인터넷, e-trade 포함), 디자인,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 지원 및 법적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관련 업무별 3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www.ige.ch (독/불/이태리/영어 제공)
-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 관련 연구소 (The registry of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 홈페이지 : www.swissreg.ch
-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정보 (Patent and technology information)
 - 홈페이지 : www.espacenet.ch
-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Now Accessible Online for All)
 - 홈페이지 : www.ip4all.ch

20.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보호목적의 규정은 연방 및 주(칸톤)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식품 및 의약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

가. 식품, 의약품

식품과 관련된 많은 품목에 대해 최저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양념류, 품질, 가공, 포장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생산 및 수입 의약품의 국내 시판을 위해서는 범 칸톤 의약품관리국(IKS)에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IKS" 허가필 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나. 전기전자제품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은 스위스 전자전기 기술 협회(SEV)의 검사인증 제도가 있다. SEV 검사인증제도는 의무적 인증대상품목의 경우 상기 인증 없이 판매, 유통,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국내반입, 판매 시 연방 전기법에 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일반 가전 제품 바이어에 따르면, 만약 CE 마크가 있을 경우에는 SEV 마크 취득은 그리 어렵지 않음.

< 참고 >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 전기전자 제품 등 안전검사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승인 마크인 CE 마크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안전조건 (필수요구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과 구주 자유 무역 연합(EFTA) 지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준 회원국 (헝가리, 폴란드, 체코)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음.

CE 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 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 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을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하게 되었으며 총 17개 인증대상 품목 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 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규격의 종류, 적용대상, 취득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 해당 기관을 접촉해도 알 수가 있음.

SEV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증서는 아니지만 CE 마크와 더불어 SEV 마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스위스시장 진출에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다. 기타 소비자보호

그 외 스위스 공적 사고 보험 공단(SUBA)이 인정하는 안전규격인증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제품의 신뢰성 제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공단의 보험 변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관련 인증제도임.

한편, 다양한 민간기구들이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들에 직접 간여하여 동일한 품목에 대한 여러 공급업체들의 제품을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교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스위스경제사무국인 SECO가 있으며 FTA를 포함, 교역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 Effingerstrasse 1 CH-3003 Bern
 - Tel : +41-31-322-5656
 - Fax : +41-31-322-5600
 - Homepage : www.seco.admin.ch

스위스 무역진흥기관으로 OSEC이 있으며 스위스의 수출 진흥, 전시회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 (OSEC)
 - Stampfenbachstrasse 85 CH-8035 Zurich
 - Tel : +41-44-365-5770
 - Fax : +41-44-365-5492
 - Homepage : www.osec.ch

스위스 수입업협회로서 SIPP0가 있으며 수산업, 의류 등 산업별 프로그램 운영 및 수입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 Swiss Import Promotion Programme(SIPPO)
 - Stampfenbachstr. 85 P.O. Box 492 CH-8035 Zurich
 - Tel : +41 44 365 52 00
 - Fax : +41 44 365 52 02
 - Homepage : www.sippo.ch

스위스 수입·도매자 협회

- Federation of Swiss Importers and Wholesale-Traders(VSIG)
 - Gueterstrasse 78, Postfach, CH-4010 Basel
 - Tel : +41-61-228-9030
 - Fax : +41-61-228-9039
 - Homepage : www.vsig.ch

22. 시장특성

가. 시장규모

인구규모는 742 만명으로 시장규모는 작은 편에 속하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불을 상회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소득을 향유하고 있는 스위스는 1인당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고밀도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급제품, 고가제품을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규모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 스위스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등한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스위스는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 및 문화권의 소비자로 구성되어있어 스위스 시장진출에 성공한 제품은 유럽 지역 대부분의 시장에 걸쳐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임.

스위스 업체들은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언어사용 능력으로 일찍부터 인근 지역국들과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음. 대부분의 중견업체들은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에 판매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스위스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한다면 서유럽 진출에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나. 시장특성

스위스는 독일어, 불어, 이태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각 언어권별로 다소 상이한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어 스위스 시장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 적합한 시장임. 또한 스위스시장은 고가 고품질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한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 및 최고 품질 제품에 대해서는 개척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시 유럽시장 공략의 사전단계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를 위해 일단 스위스시장에 제품을 선보인 후 각 언어 문화권별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스위스 시장은 협소하며 안정적인 시장 특성상 수요신장이 빠른 편이 아닌 관계로 대량 구매가 가능한 분야는 중간 도매상을 배제하여 중간 이윤을 소멸시키고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 소비업자나 대량 소비업 조직(소비자협동조합, 백화점 등)과 수입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고 있고, 생산재의 경우 해외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수입하고 있음.

소매업이 점차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elf-Service, Discount store, Supermarket 등의 대형 소매점이 확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 대형 소매점과의 거래가 향후 한국 상품의 대스위스 시장진출 확대에 있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예전에는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통한 제품공급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유통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의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음. 실례로 대형유통업체인 Coop 과 Migros 등은 홍콩과 대만에 구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본사 내에도 구매파트를 증설하여 직접수입을 늘려가고 있음.

온라인 쇼핑이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고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나, 아직 유럽연합에 비해서 스위스는 관련 법규가 완성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결재를 꺼리는 심리와 A/S 의 문제점 때문에 대형유통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외에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주유소 내에서 운영하는 체인점인데 최근 2~3 년간 매출액이 급성장 했음. 간단한 아이디어 상품, 공구, 선물용품 등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음.

한국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MP3, LCD TV, 휴대폰, 셋톱박스, DVD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과 아이디어 광고용품에 대해서는만 고품질 신개발제품이라는 인식이 높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브랜드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음. 실례로 MP3, PMP, LCD TV, 맛사지 기기 등에 대해서는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맛사지기기에 대해서는 지역별 전문 대리점도 다수 운영중임. 아직 진열은 되지 않았지만 아시아쪽의 건강식품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서 한국식료품을 취급하려는 계획도 있음.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전시회 참가/참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는 '스위스 전시협회(Association of Fairs, ASF)' www.messenschweiz.ch 를 통해 알 수 있음.
- ASF 에서는 연간 '전시 칼렌다' 를 발간하고 있으며 신청을 하면 무료로 우편 송부함.
- ASF 를 통해 각각의 전시회 주최기관의 연락처 정보를 얻은 후에 해당 전시회 카달로그를 요청하면 유료 또는 무료로 발송.

나. 제품별 해당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스위스 기계, 전기, 전자, 금속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 (The Swiss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SWISSMEM, www.swissmem.ch)

- 스위스 화학 산업협회
 - (Swiss Society of Chemical Industries; SSCI or SGCI, www.sgci.ch)
- 스위스 시계산업협회
 - (Federation of the Swiss Watch Industry; FH, www.fhs.ch)
- 스위스 섬유산업연합회
 - (Swiss Textile Federation; TVS, www.swisstextiles.ch)
- 스위스 물류산업협회
 - (Swiss Association of Logistic: SGL or ASL, www.sgl.ch)
- 스위스 플라스틱협회
 - (Swiss Plastics Association; KVS, www.kvs.ch)
- 스위스 환경산업협회
 - (The Swiss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SVUT, www.umwelttechnik-verband.ch)
- 스위스 수입·도매업자 협회
 - (Federation of Swiss Importers and Wholesale-Traders; VSIG, www.vsig.ch)
- 취리히 테크노파크
 - (Technopark Zurich, www.technopark.ch)
- 스위스 건축 관련업체
 - (Schweizer Bau Dokumentation, www.baudoc.ch)

다. 전문잡지를 활용

- 전문잡지 정보는 각 전시회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 정보가 대부분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전문매거진에 관련 업체 정보, 신상품소개, 현재 스위스시장의 트렌드 등이 소개되고 있음
 - Consumer Electronics Medias(www.ce-markt.ch) : IT 관련 업체 정보
 - Boutique(www.etzel-verlag.ch/boutique) : 신상품 소개
 - Auto Illustrierte(www.auto-illustrierte.ch) : 자동차 정보
 - OnlinePC(www.onlinepc.ch) : 컴퓨터, 인터넷
 - Swiss Snowsports(www.snowsports.ch) : 겨울철 스포츠
 - HandelsZeitung(www.handelszeitung.ch) : 스위스 경제 주간지
 - Swiss Shop(www.detaillisten.ch) : 스위스 도/소매업 정보
 - IT Reseller(www.itreseller.ch) : IT 제품과 시장 동향
 - Computerworld(www.computerworld.ch) : 컴퓨터 관련 제품과 시장 동향
 - TREND(www.trendmagazin.ch) : Musik, Mode, Lifestyle, Game 등에 대한 트렌드 소개
 - Petri Heil(www.petri-heil.ch) : 낚시 관련 정보
 - Schweizer Skisport(www.sportart.ch) : 스키 관련 정보
 - Sport insider(www.iguana.ch) : 스포츠 트렌드 정보

- Golf & Country(www.golfandcountry.ch) : 골프 관련 정보
- Coop(www.coopzeitung.ch) : 유통업체인 Coop사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 Migros(www.migrosmagazin.ch) : 유통업체인 Migros사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스위스 전시협회(Association of Fairs, ASF)www.messenschweiz.ch를 통해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정보를 알 수 있음.
- 각 전시회 주최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지난번 전시회에 참가했던 업체의 리스트를 제품/지역/위치 별로 분류한 DB 자료가 있음.
- DB 자료에는 통상적으로 업체 홈페이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바이어 정보를 습득 가능.
- 인근 지역인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대형 전시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스위스업체 정보를 습득 가능

○ 각종 검색 홈페이지를 통한 바이어 발굴

- Kompass(www.kompass.ch) :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유료)
- Wer Liefert Was?(www.wlw.ch) :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
- Businesslink(www.businesslink.ch) : 비즈니스 검색 사이트
- Gate24(www.gate24.ch) : 제품, 업체명을 통해 업체 검색 가능
- Swissfirms(www.swissfirms.ch) : 기업 검색 사이트
- Findis(www.findis.ch) : 기업 검색 사이트
- Profil(www.profil.ch) : 기업 검색 사이트

○ KOTRA, 스위스 취리히 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ch)에 게시된 인콰이어리를 통한 바이어 발굴

○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에 기술된 제품별 해당 협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협회에 가입된 업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각 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 세미나 및 소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업체 정보 획득 가능.

○ 국내진출 스위스 업체 협회 홈페이지에 현재 한국과 활발히 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의 정보 검색 가능

- WISS-KOREAN BUSINESS COUNCIL : www.skbcckorea.org

○ 스위스 소비시장 연구소(IHA-GfK, www.ihagfk.ch)에서는 매년 스위스 대형유통업체 정보 책자를 발간 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유료 주문 가능(독어로만 발간)

- 스위스의 대형유통업체들과 담당자 정보, 스위스 전역의 체인점 정보와 주소 등이 수록되어 있음.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국내업체는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있지만 1% 부족으로 아쉽게도 고객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음.(스위스 현지 업체 방문상담 중 “한국 업체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이어의 답변을 정리한 내용임.)

가. 바이어의 마인드로 뛰어들자.

바이어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품만 판다는 생각보다는, 바이어도 또 다른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입장을 바꿔 상대방의 마케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마케팅 배려라고 해서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었음. 스위스 바이어들이 만날 때마다 입이 마르게 하는 얘기가 2 가지 있음. 하나는 “스위스 시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수 없고 소량으로 자주 주문해야 하는데 괜찮겠는가?”와 다른 하나는 “고객들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테스트기간이 다른 나라 보다 오래 걸린다” 였다.(실제로 스위스 시개단에 참가한 국내업체는 샘플을 보낸 후 3 개월 후에 스위스 바이어로부터 소량의 주문을 받았는데, 스위스업체 이름도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미팅에 임하면 바이어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나오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리게 됨. 필요한 사항과 상대방의 마케팅 애로점에 대해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끈끈한 사업파트너로 발전하게 됨.

나. 스위스 고객 눈높이에 맞는 소개서를 제작하자.

실제로 방문한 업체의 담당자 대부분은 한국업체의 제품소개서가 산만하고 고객의 주목을 끌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으며, 스위스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스위스식 3 단계 제품소개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도 같을 것으로 예상됨) 제작이 필요하다고 했음.

- 1 단계 (의사타진용)
 - 1 단계 제품소개서는 접어서 편지봉투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복사용지(A3) 1매정도가 적당하며 전체 제품을 종류별로 묶어 사진을 나열하고 특징을 설명함. 일단 한눈에 들어와야 하며 간단 명료해야 하고, 고객에게 최초 접근시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제품사진을 중심으로 꾸밈. (회사 이력은 물론이고, 생산업체일 경우는 반드시 생산자라는 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바이어들은 국내업체의 홈페이지를 봐서는 생산자와 도매상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며, 또한 홈페이지가 대부분 화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음.)
- 2 단계 (관심고객 확보용)
 - 2 단계 제품소개서는 제품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관심고객용으로 주로 한국업체들이 사용하는 카탈로그와 형태가 일치하는데, 제품 종류별로 사진을 위주로 나열을 하고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관심고객에게 일일이 방문을 하며 샘플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품사진이 매우 중요함.

○ 3 단계 (테크닉노트, 샘플)

- 1·2 단계를 통해 고객과 구체적으로 원하는 제품이 선택되면 3 단계에 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소개서와 샘플이 필요함.
- 마케팅 담당자가 모든 종류의 기술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없으므로 제품별로 복사용지 한 장 분량의 테크닉 노트가 필요함.
- 가능하면 심플한 테크닉노트가 적당하며 그 분야 선도기업 제품과의 비교표가 있으면 바이어를 설득시키기 위해 매우 효율적임.

3 단계로 분류하여 소개서를 제작함으로써 최초 경제적인 부담은 있으나, 2·3 단계의 소개서는 이미 국내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며 1 단계(의사타진용)만 추가적으로 제작하면 됨. 대부분의 국내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2 단계(잠재고객 확보용) 소개서를 1 단계(의사타진용) 소개서로 대체 사용하고 있으므로 최초 접근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2 단계 제품소개서의 내용으로 제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1 단계 제품소개서를 의사타진용으로 새롭게 제작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옴.

다. 회사 이미지에 신경을 쓰자.

한국업체는 중국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스위스 고객에게는 이미 가격경쟁력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사의 규모, 매출액, 종업원, 에이전트 현황, 수상경력, 전시회참가 경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업체와 제품 품질에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좋음. 예를 들면 신제품일 경우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트렌드가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제품의 매출비중과 유럽시장에 최초 진출할 경우 선도업체로서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제품의 경우는 다른 저가제품과의 비교설명, 신상품 출시 계획, 유럽 쪽 전시회 참가 의지 등을 이해시키면 반응이 좋을 수 있음.

스위스 바이어들은 복장, 용모, 명함을 건네주는 방법에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비즈니스에서는 보수적인 면이 많음. 그리고 구두를 통한 의견교환이나 약속 후에는 가능하면 메일로 정리를 해서 확인을 받은 것이 바람직함.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나,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들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고발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선진국답게 모든 시스템들이 법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규제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법적인 규제들이 오랜기간 동안 문화적인 금기사항으로 잘 융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차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나. 거래 시 유의사항

정직하고 정확하며 철저한 국민성으로 신뢰성은 지극히 높으나, 인간적인 관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규범적이며 법규 및 계약에 의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계약체결, 상담 체결 시에는 미진한 부분은 철저하게 서류상으로 확인하여야 함.

스위스인들은 성격이 매우 냉정하고 차가운 편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일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함. 또한 스위스 기업인들은 상담을 위해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료를 매우 꼼꼼히 체크하는 편임. 따라서 자료상의 오타 또는 실수(업체명이 앞뒤 페이지에서 다르게 나오는 등)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계약상담 후에 실제 계약까지는 우리업체들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고 손해를 최소화 하려는 비즈니스 스타일 때문임. 상대방이 연락을 할 때 까지는 인내하는 습관이 필요함. 실제로 상담 후 약 3~4 개월 후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동안 어느 바이어는 우리업체로부터 약 10 통의 재촉 메일을 받았다 함.

상담 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독일어권 지역에서는 독일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며 불어권 지역에서는 불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야 함. 외국인이 독어사용권에서 불어를 사용하거나, 불어 사용권에서 독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 효율적인 마케팅

스위스에는 많은 대행업체(Agent)가 있으며 한 상품 또는 특정상품군의 전문취급업체가 있기 때문에 스위스 진출경험이 없거나 현지 디스트리뷰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커미션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 하지만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이 스위스시장의 협소함과 광고비용 지불 조건 때문에 독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에이전트기간, 해약시점, 지역별 안배, 광고비용 등 관련사항을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함.(현지시장 사정에 밝은 해당 무역관과의 사전 상의가 바람직함)

특히 주로 홍콩과 대만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스위스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본부를 통하여 대 스위스 진출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아시아에 구매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유럽업체의 특성상 스위스 본사는 구매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아시아지역 구매 매니저 접촉이 수출의 관건임).

27.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개황

일반적으로 스위스 세관의 통관 절차는 간편한 편임. 국경지역 혹은 국제공항의 보세구역 에는 세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당해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 시 세관원이 일일이 통관 물품을 검사하면서 통관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통관 운송을 대행하는 업자가 세관에 통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후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면 됨.

나. 수입신고

수입업자는 세관신청서와 함께 인보이스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함. 인보이스에는 통관 물품명세, 상품 인도가격과 보험을 포함한 각종 비용, 순중량 및 총 중량, 원산지가 명기 되어야 함. 스위스의 관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서 수입되는 물품의 무게 (포장포함)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세관 통관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며, 수수료 이외에는 특별히 부과되는 과징금은 없음.

다. 물품검사

수입이 규제되는 식품이나 의약품은 제외한 일반제품의 경우에는 샘플링검사가 대부분이며, 일일이 물품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음. 그러나 세관은 국민보건 혹은 안보상의 목적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해 제품을 일단 통관 후 샘플을 관련 기관에 보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수입된 제품이 문제가 있다는 조사분석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강제 반송시키도록 하고 있음.

라. 세관제출서류 및 통관절차

- 제출서류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중량세부내역서, 원산지증명서
- 통관절차
 - 통관서류 제출
 - 적하목록 제출
 - 물품 검사 및 심사
 - 물품 무게 측정
 - 통관비용 측정
 - 통관증명서 발급
 - 통관비용 지불
 - 영수증 발급
 - 물품 반출

28. 운송

가. 국제공항 및 국제항

- 취리히(Kloten, www.unique.ch), 제네바(Cointrin, www.gva.ch), 바젤(Mulhouse, www.euroairport.com) 3 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 스위스는 내륙국으로서 국제항구가 없으며, 바젤이 라인강에서 로테트담까지 잇는 유일한 내수로 항구이다.
- 유럽연합 국가는 내륙항을 이용하여 약 1000 억 tkm(톤킬로미터)를 통해 매년 약 500 백만 톤이 이동되고 있음.
- 스위스는 약 50 억 tkm 정도 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스위스 국철(SBB)보다 0.5 배 큰 물량으로 스위스 전체 무역량의 1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저렴한 운송비와 북/남을 잇는 최적의 라인으로 각광받고 있음.
- 바젤 라인항은 전체 130 만 m²에 해당되는 4 개의 항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구는 고속도로, 철도와 연결되고 있음.
 - 클라인휘니겐항(Kleinhüningen) : 철강, 건조물, 농산물, 액상품목
 - 상요한항(St. Johann) : 가장 오래된 항구로 건조물을 주로 하역

- 비르스펠덴항(Birsfelden) : 건조물, 액상품목
- 이우하펜 무텐츠항(Auhafen MuttENZ) : 석유, 화학 등 액상품목
- 몇 년 전 과감한 투자로 하역과 교통망을 위한 신규 투자를 했음.
 - 농산물 및 건조물을 위한 하역장(grain elevators) : 385,000 m³
 - 선적 화물창고 : 80,000 m³
 - 기름 및 액상품 창고 : 1,250,000 m³
 - 커버창고 : 250,000 m³
 - 오픈창고(Container terminals) : 200,000 m³
- 현재 물류, IT, 세관, 포장, 하역 등에 약 1500 여명이 관계자가 종사하고 있음.
- 운송가격 비교 : tkm(톤킬로미터)당 평균가격 비교
 - 선박 이용 시 : 1.9 Rappen
 - 철도 이용 시 : 9.5 Rappen
 - 고속도로 이용 시 : 15.8 Rappen
- 바젤 항과 관련된 선박회사, 하역업체, 창고업체, 항만용역업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와 라인항 바젤의 담당자를 접촉하면 됨.
 - <http://www.portofbasel.ch/index.php?sprache=d&nav=3&subnav=306>
 - 업체명 : Rheinschiffahrtsgesellschaft Basel
 - 주 소 : Hochbergerstrasse 160, Postfach, 4019 Basel, Switzerland
 - 전 화 : +41-61-631-4545
 - 팩 스 : +41-61-631-4594
 - 이메일 : rsd@portobasel.ch

나. 주요 운송회사 리스트

- Kuehne & Nagel International AG
 - Dorfstr. 50, 8834 Schindellegi SZ, Switzerland
 - Tel: 044 786 95 11
 - Fax: 044 786 95 95
 - Turnover 2004: Sfr 11.5 billion
 - Employees: 21100
- Panalpina Welttransport (Holding) AG
 - Viaduktstr. 42, Postfach 4002 Basel, Switzerland
 - 4051 Basel BS
 - Tel: 061 226 11 11
 - Fax: 061 226 11 01
 - E-Mail: info@panalpina.com
 - Turnover 2004: Sfr 7.4 billion
 - Employees: 13200
- Gondrand AG
 - Viaduktstr. 10, Postfach 3047 4002 Basel, Switzerland
 - 4057 Basel BS
 - Tel: 061 285 30 00

- Fax: 061 281 84 28
 - E-Mail: gd.gondrand@gondrand.ch
 - Homepage: www.gondrand.ch
 - Turnover: Sfr 250 million
 - Employees: 340
- Fracht AG
- Birsigstr. 79, Postfach 4011 Basel, Switzerland
 - 4054 Basel BS
 - Tel: 061 287 95 55
 - Fax: 061 287 97 50
 - Homepage: www.fracht.com
 - Turnover: Sfr 614 million
 - Employees: 600
- M+R Spedag Gruppe
- Kriegackerstr. 91, 4132 Muttensz BL, Switzerland
 - Tel: 061 466 91 11
 - Fax: 061 461 70 36
 - E-Mail: info@mrspedag.com
 - Turnover: Sfr 425 million
 - Employees: 820

29. 분쟁해결 절차

스위스는 26 개 칸톤별로 독자적인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성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상 1 심과 2 심을 거치게 되며 마지막 단계인 연방법원을 거칠 수도 있다.

각 칸톤에는 기소 및 파산관련 사무소가 있어 미해결 채무, 청산 절차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무역 소송과 관련, 먼저 국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 변호사는 고객에 대해 사전에 일정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한다.

무역 소송전 취해야 할 조치로는 먼저, 최종 지불 요청서를 등기 우편을 통해 보내며 채무 해결기간으로 약 14 일을 준다. 그 후 어떤 결과도 받지 못하면 기소 및 파산관련 사무소에 채무 강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사무소는 지불에 대한 정식 요청서를 20 일안에 보내게 된다. 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은 채무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동 단계를 거친 후에 2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채무자 거절
 - 채무자는 10일안에 강행 절차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거나 무효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거절이 접수되면 강행 절차는 중지되고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채무자 승인
 - 채무자의 승인에도 20일내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파산이나 담보설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방법은 채무 획득에 유리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30. 유형별 분쟁사례

현재는 대부분이 특허 관련 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허분쟁은 자체가 기업 비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건수가 발표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용품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인터넷 분쟁사례(스위스는 분쟁사례 10 위)까지 다양한 형태의 분쟁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분쟁사례

생명공학 관련 발명에 대한 분쟁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분쟁사례는 스위스 룩슈(Roche)사와 국내 C사의 인터페론 사건이다.

1) 분쟁 배경

스위스 룩슈(Roche)사는 항암제이자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의 최초 개발자로 1981 년 국내에 특허 출원하여 1987 년 등록된 인터페론의 유전공학적 제조방법에 대한 3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음. 국내 C 사가 1989 년 출원, 1992 년 등록하고 이를 제조 판매하게 되자, 룩슈사는 국내 C 사에 대하여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국내 C 사는 룩슈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음.

2) 주요쟁점사항 및 판결요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는 룩슈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법 특허로서(1981 년에는 국내에 물질특허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방법 출원만 가능했음), 국내 C 사의 제조기술은 룩슈의 특허기술과는 상이하므로 룩슈의 국내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 소송결과

룩슈사의 특허는 공지기술의 조합에 의한 용이 발명으로 무효가 확정되고, 국내 C 사의 특허 역시 공지기술에 의한 용이 발명으로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으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국내 C 사의 제조방법이 룩슈사와 상이함이 인정되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으로 확정되었고, 이들 결과에 따라 국내 C 사에 대한 룩슈사의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이외에도 스위스 농화학 업체인 신젠타(Syngenta)는 2004 년 5 월 자신들이 개발한 살충제 생산기술을 중국 업체들이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따라 중국 난징의 인민중재법원이 신젠타의 살충제생산기술 특허를 침해한 중국업체들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신젠타의 특허를 침해한 중국의 안칭 루에 화학 등 2 개 업체는 신젠타에 공식 사과하는 동시에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처럼 지재권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지재권 보호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지재권 침해 사례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재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자 중국 법원도 지재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축적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즉시 재판에 착수해 지재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제조방법 발명의 권리침해의 판단 사례

특허권자인 원고의 특허청구범위는 나프티리금-3-카복실산 또는 퀴놀린-3-카복실산을 일반식(3)의 아민과 반응시킴을 특징으로 하여, 일반식(1)의 7-아미노-1-사이클로프로필-4-옥소-1, 4-디하이드로-나프티리딘(퀴놀린)-3-카복실산 및 이의 염을 제조하는 방법이고, 피고의 제조방법은 출발물질,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원고특허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생성물질과 동일범위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특허의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언급된 바 없는 촉매를 사용한 점이 다르다.

1) 판결 요지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수단)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 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촉매사용이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이 아니라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후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후발명은 선행발명과 제조방법이 상이한 것으로 이는 특허방법의 권리범위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2) 고찰

후 발명이 선행발명을 이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 발명은 선행발명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이용관계는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의 경우와 같이 후 발명이 선행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행발명의 특허요지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가하는 경우에는 성립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제법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중간물질이나 촉매 등 어느 물질의 부가가 상호의 반응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과정의 일시점을 잡아 선행방법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상호반응 후에도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기계, 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적용되는 이용관계의 논리를 제법 발명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간접침해를 인정한 사례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레이저 프린터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중의 하나인 토너 카트리지를 제조, 판매한 행위는 간접침해라고 인정한 사례

특허청구범위는 감광드럼, 크리닝부 및 대전기를 일체로 유니트화한 감광드럼유니트와, 그 감광드럼유니트를 수납하는 드럼섹션과 토너박스를 착탈 가능하도록 하는 토너섹션을 가진 현상유니트와, 위 감광드럼유니트의 위치결정 부재와 위 현상유니트의 위치결정 부재를 가이드하는 가이드홈을 가진 기기 본체프레임을 가지도록 구성하여, 소모품인 감광드럼유니트, 토너박스, 현상유니트를 별도로 가져 경제적으로 함과 동시에 현상유니트 위에 감광드럼유니트, 토너박스가 수납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취급을 편리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기록 장치이다.

1)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제조, 판매하는 토너 카트리지는 본건 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토너 카트리지는 그 모양과 형태가 현상유니트와 감광드럼유니트와의 결합 방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본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라 할 것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도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입할 수도 없는 물품일 뿐만 아니라 본건레이저 프린터의 구입시에 위 토너 카트리지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인 신청인 측에서 그러한 토너 카트리지를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토너 카트리지는 본건 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

2) 고찰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 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라. 기능적 균등론을 적시한 판례

상대방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는 자신의 특허권의 보호범위 즉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구성요소와 상대방의 실시물 내지 실시방법을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특허법원은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었다.

특허법원 2000. 9. 7. 선고, 99 허 9755 판결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필수적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가)호 고안이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되고(이를 문언 침해라고 한다, 이는 판결내용은 아님) 기술적 구성요소를 하나라도 결여하고 있으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되지만,

더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벗어나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결여된 구성요소 대신에 등가관계에 있는 다른 구성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해 고안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소위 균등론을 적용하여 침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균등 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오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당해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당업자가 (가)호 고안의 제조시점에 있어서 극히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었던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가)호 고안이 당해 등록고안의 출원시점에 있어서 극히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 있었던 것이라거나 나아가 당해 등록 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등록청구범위 즉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6 년 8 월 기준, 투자관련 데이터는 2005 년도 수치가 입수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임)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 회복세로 돌아온 FDI 유치

스위스 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의 해외 직접투자(FDI)는 스위스로 유입되는 FDI 보다 활성화된 상황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서비스 중심의 경영과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압력으로 많은 스위스 기업들은 이들의 생산지역을 아시아 또는 동유럽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재배치’는 결국 해외직접투자로 연결된다. 그러나 스위스 또한 FDI 유치를 등한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5 년 해외에서 스위스로의 FDI(외자의 유입)는 2004 년에 비해 10 배 가량 증가했다. (2004 년 약 CHF16 억, 2005 년 약 CHF184 억). 주된 요인은 스위스 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밀려드는 주문량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투자로 야기되었다. 특히 소비경향이 회복세를 타면 서 무역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는 대 스위스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반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은 전망에 비해 약세를 지속함으로 동분야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5 년 스위스 투자수지를 보면 대 스위스로의 FDI 가 증가함과 동시에 스위스의 해외투자액 또한 약 2 배 증가함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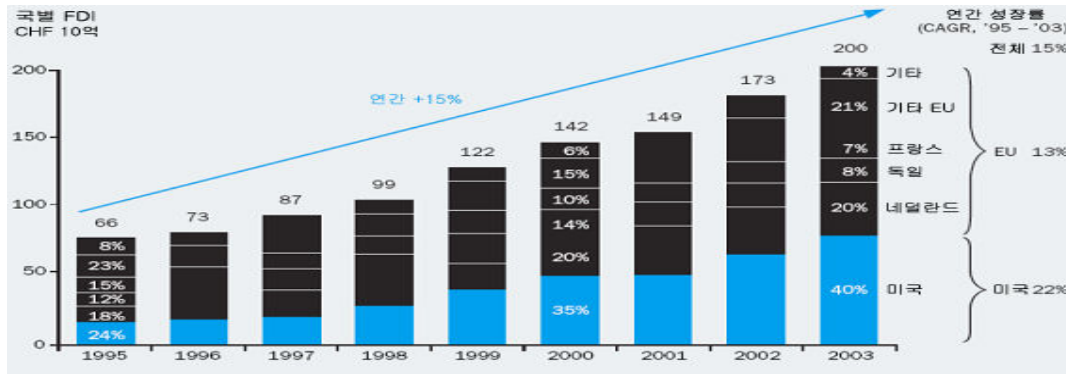
스위스의 투자수지

(단위 : CHF 백만)

구분	2003	2004	2005
해외투자진출	20,795	32,422	65,470
해외투자유치	22,224	1,643	18,395
순투자유치액	1,429	-30,779	-47,075

자료원 : 스위스중앙은행(SNB) 2006 Aug

2) 지속되는 미국의 투자



자료원 : BGC Survey 2006

2005 년도 해외에서 스위스로의 투자를 국가별로 보면, △1 위 미국 CHF8,439 백만 △2 위 네덜란드 CHF5,521 백만 △3 위 영국 CHF1,395 백만 △4 위 프랑스 CHF1,208 백만 △5 위 덴마크 CHF777 백만으로 미국은 스위스 전체 실제투자유치금액의 약 45.9%를 차지했다. 반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2004 년(CHF529 백만)에 이어 2005 년에도 CHF48 백만을 회수하며 비활동적인 투자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2004 년 CHF33 백만)만이 CHF64 백만을 투자하며 2005 년을 마감했다.

2005 년도 대 스위스 외국인직접투자 국별 순위

(단위: CHF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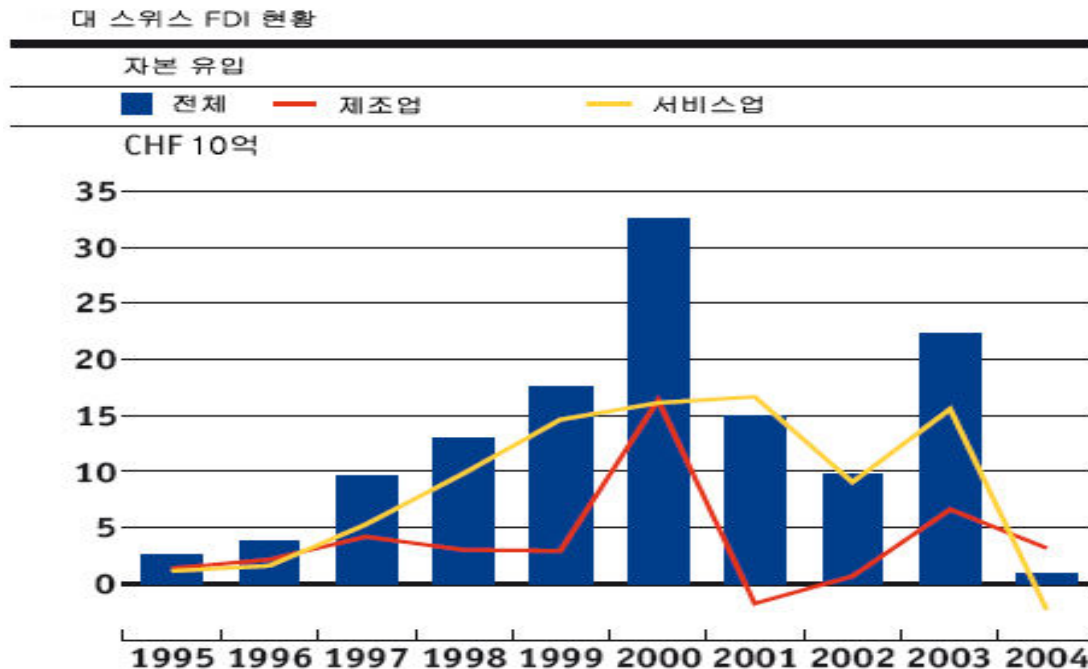
순위	국가 명	실행 액
1	미국	8,439
2	네덜란드	5,521
3	영국	1,395
4	프랑스	1,208
5	덴마크	777
6	독일	738
7	오스트리아	655
8	스페인	543

자료원 : 스위스중앙은행 2006 Aug

2005 년 업종별 FDI 를 살펴보면 △1 위 금융 및 지주회사 CHF12,010 백만 △2 위 무역 CHF2,118 백만 △3 위 유통 및 통신 CHF1,835 백만 △4 위 은행 CHF1,076 백만 △5 위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CHF796 백만으로 전체적 상승성향을 보여주었다. 2004 년과는 반대로 2005 년 금융 및 지주회사들이 회수금을 재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 금융산업의 복귀를 시사했다. 2004 년 FDI 분야 1 위를 차지했던 화학 및 플라스틱의 경우 2005 년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으나 2006 년 상반기, 스위스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계기로 그 투자액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스위스 언론매체들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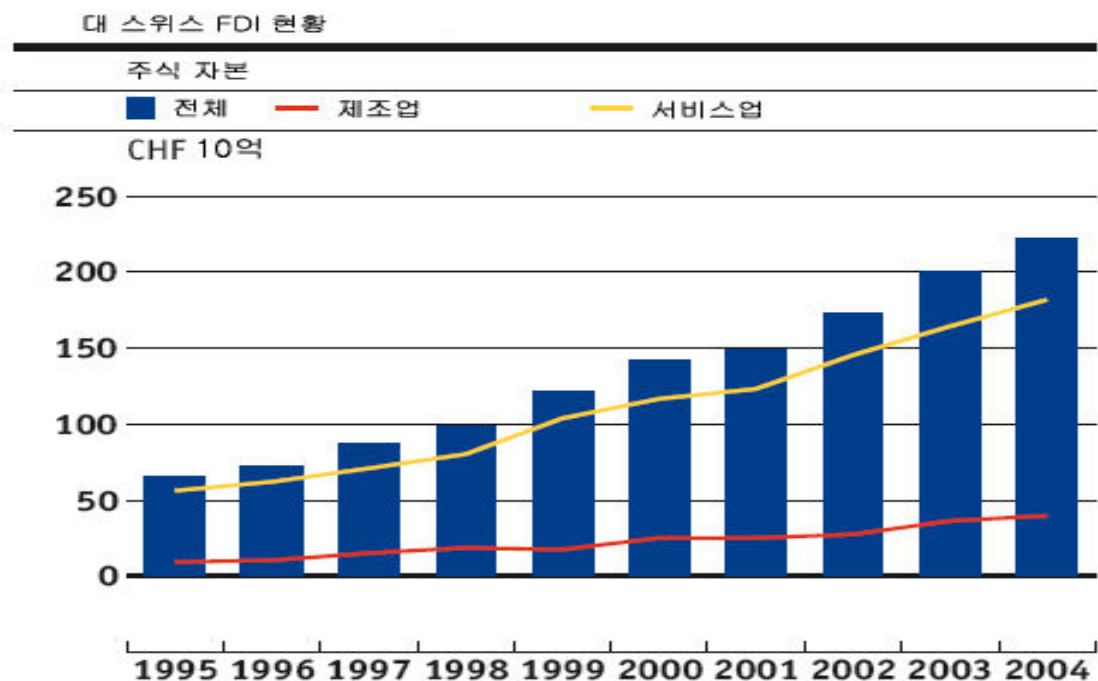
3) 화학산업 위주의 투자, 서비스업 감소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투자는 2000 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증가추세인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2004 년 대폭 감소하였다. 주요 요인은 금융 및 지주회사들의 자금 상환이며 이는 1995 년 이후로 처음 일어난 현상이다. 서비스업 투자는 2000 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었으나 2004 년 EU 국(EU25) 투자자들은 총 CHF40 억을 회수하였다.



자료원 : 스위스 중앙은행(SNB) 2005

투자총계로는 서비스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CHF18,370 백만) 투자 총계는 서비스업(CHF181,738 백만)과 비교 시 약 10 분의 1에 불과하다.



자료원 : 스위스중앙은행(SNB) 2005

4) 지역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스위스의 산업 클러스터



자료원 : Swiss Commercial Register 2005, BCG

생산 및 인건비가 높은 스위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은 스위스를 유럽본부 또는 생산 기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Kanton)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 칸톤 정부는 특정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 투자세 세제혜택, 입지장기임대, 전문 인력지원 등으로 FDI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 이 클러스터들은 국경지대에 근접하며 해외, 국내로의 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2006 년 대 스위스 FDI 전망

2005 년 상반기까지 저조하던 대 스위스 FDI 실적은 하반기에 들어 성장하는 스위스 경제와 더불어 개선되기 시작했다. 스위스 경제연구소(KOF)는 약 6,800 개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은 2006 년 스위스 내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증가하는 주문량과 매출상승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 일반산업

- 2005년 하반기 상승세를 탄 스위스 경제와 더불어 외투기업들의 주문량 또한 급증하였다. 이들은 이미 생산 공장 및 기기를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2006년 2차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54.4%).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의약과 관련된 '화학 산업'이다. 화학 관련 업체들의 44.6%가 2006년 스위스 내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 대비 낮은 매출'과 '전문인력 부족'을 들고 있다.

○ 서비스업

- 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의 46.3%는 2006년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으로 2005년과 비교 시 약 6% 증가한 수치이다. 분야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대형유통, 은행, 보험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소매유통은 2005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유통의 경우 6년간(1999-2004) 확장을 진행함으로 당분간 투자는 보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스위스의 폐쇄적인 규정들로서 특히 소매유통, 금융, 보험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 한국 기업의 저조한 투자 실적

한국과 스위스 양국간 무역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1971 년 4 월 7 일 ERP1 투자촉진 및 보장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스위스 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은 별도로 한국으로부터 의 투자금액을 책정하지 않는다. 이는 FDI 금액이 낮은 것과 보안상 문제 발생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의 신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오세아니아가 스위스에서 차지하는 주식자본은 1.1%에 불과하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일본이 CHF1,081 백만으로 최고 높았다. 그러나 2004 년(-CHF530 백만)에 이어 2005 년에도 CHF117 백만을 회수하였다.

연도별 한국의 대 스위스 투자 현황

(단위: 천불)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2	1	445	0	0
1983	0	0	0	0
~	...	...	...	...
1991	0	0	0	0
1992	1	267	1	267
1993	0	0	0	0
1994	1	953	1	950
1995	1	1,700	1	1,700
1996	3	6,472	3	5,554
1997	0	9,718	0	8,948
1998	1	2,166	1	612
1999	0	2,900	0	2,900
2000	0	0	0	0
2001	1	138	1	138
2002	2	22,085	2	22,019
2003	0	3,441	0	3,441
2004	1	16	1	16
2005	1	3,671	1	2,430
2006	4	2,627	4	3,132
Total	17	56,599	16	52,107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2006 년 6 월말 기준)

33.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스위스는 고물가, 고인건비 지역으로서 일반 제조업분야의 투자는 경제성 측면에서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임. 스위스의 첨단기술이나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할 목적이라면 스위스가 적격 투자진출대상지역이나, 첨단기술이 필요치 않는 일반 소비재의 경우에는 높은 생산코스트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높은 생산코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내에서 제조활동을 하고 있었던 스위스 기업들조차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키 위해 생산기반을 동구지역 등으로 이미 이전한 상태임.

우리나라 기업 중 제조업분야에는 시계 및 제약분야가 투자 진출해 있으며, 시계의 경우 스위스 제품을 최고로 간주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겨냥하여 부품을 국내에서 들여와 스위스에서 국내산 부품과 스위스 무브먼트를 결합하여 "Made in Switzerland" 로 원산지 표기 후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음.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정책

스위스 정부는 외국의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의 대 스위스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민간베이스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연방 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투자유치 성약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주체의 이윤동기 및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주변 투자여건 및 제도정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차원에서는 별도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투자유치제도는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일부 칸톤주정부 차원에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일정기간 기업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공여와 공장부지의 저가공급, 금융알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스위스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토지매입 허가제를 '97.10.1 일부터 폐지하였으며, 생산, 영업 및 서비스 업무용도로 구입하는 토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다.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00% 지분소유의 투자가 가능하나 은행업은 Swiss Banking Commission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업, 취업용역회사, 증권 거래업, 카지노영업, 무기 및 폭약 관련업종은 일부 주정부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함.

또한 스위스 국적기의 운행, 국내항공사 운행 등에는 외국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사진의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스위스 국적인으로 선임토록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스위스는 환경보호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스위스 내 산업시설 설치 및 운영 시에는 반드시 환경보호법을 고려하여야만 함. 연방 및 주(칸톤)정부가 환경침해 요소를 통제하고 있음. 베른소재 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Office 가 있으며 각 주정부는 공기 및 수질오염, 소음방지, 살충제 남용 등을 직접 관할하고 있음.

라. 투자진출 기본여건

1) 원부자재조달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자원이 빈곤한 소규모 국가로서 철강, 석유정제 등 대량 생산에 적합한 산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소량 생산에 적합한 공업제품으로서 전문성을 살린 수많은 특화상품제조, 또는 금융, 보험, 운송 및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에 의해 경제가 주도되고 있는 것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2) 생산가공여건

스위스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금융, 통신, 우편, 교통과 전기, 수도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매우 잘 마련, 운영되고 있음. 물가상승률은 매우 낮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여타 유럽국가에 비해 인건비가 높아 생산비용 과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직업교육, 도제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가 매우 우수하여 현지인력은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주당 평균 노동시간도 41.7 시간으로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사분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3) 판매여건

유럽중앙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 자유시장경제, 안정된 정부 및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중립성, 다국어 사용 인력보유 등의 이유로 스위스는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부 설립 기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신용 있는 금융체제와 유럽 각국으로의 용이한 교통, 통신시설 등으로 구주공동체 국가는 물론 EFTA 국가, 동구권 국가로의 판매 등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 경제무역 관계에서 스위스는 대외무역의 2/3 이상을 유럽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대독일 수출입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내수시장은 전형적인 고급, 고가품 시장으로 유통업체의 소량다품종 구매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시장규모는 협소하나 소비자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 소득과 함께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음.

마. 투자허가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또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론적으로 모든 산업분야가 해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체류비자 또는 노동허가서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는 스위스 국적을 소유한 인력을 채용, 현지에서 경영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직접 체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2002년 6월 1일부로 실시된 스위스-EU 간의 양자협정에 의해 EU/EFTA 국적 소유자는 자유롭게 스위스 내 채용이 가능하다. EU/EFTA 국가 이외의 국적 소유자들은 스위스 외국인법에 의거 제한된 숫자만이 이동 가능하다. 이는 노동시장 구조의 내국인/외국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의 경우 스위스 내 채용을 위해서는 노동허가서 및 체류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숫자 제한 규정 BV0 Art.12에 따르면 개인사업자(특수 케이스)를 제외, 4개월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노동허가서 및 체류비자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이전, 주거지 이동시에는 재발급 받아야만 한다. 부동산 투자는 모든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과정

설립과정	설립기간(단위 : 주)					
	1	2	3	4	5	6
사전검토, 업체 등록 및 허가(회사명)	*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		*				
자본금 입금			*	*		
설립 및 설립증 발급			*	*		
칸톤 공공일지 발행					*	
경영권자의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 등록						*

자료원: Greater Zurich Area AG

34. 투자인센티브

스위스 정부 구조는 연방, 주(26개)와 지자체로 나뉜다. 스위스의 세금제도 또한 정부 구조를 따라 연방, 주와 지자체 각기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연방정부의 세금제도는 완만한 성격을 보여 기업설립에 있어서는 주정부와 지자체 세율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 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들은 보다 매력적인 세금제도를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연방, 주, 지자체 모두 세금을 면제하며 거주 회사에게는 주와 지자체가 면세혜택을 주고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10년 동안 법인세와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면제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가 지역 노동시장, 지역 경제 그리고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 심사위원들이 신청회사의 보고를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령을 위해서는 투자 이전에 해당 지자체를 접촉,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타당성조사

가. 투자형태 결정

스위스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들이 선호하는 기업형태는 주식회사(AG)이며, 합작투자나 지분참여 방식은 흔치 않다. 스위스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GmbH가 있으나, 대부분이 개인기업 형태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형태인 AG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10만 스위스 프랑이며, 설립 시 최소한 5만 스위스 프랑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불해야 한다. 주식발행은 기명주식 또는 무기명 주식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며, 최소 액면가액은 10 스위스프랑이다. 스위스 또는 외국의 어떤 사람이나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나.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스위스에서 기업 설립 및 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주 정도이며, 계획추진 단계에서 고려할 많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 먼저 설립회사 소재지 선정으로서 이는 세법, 활용가능 노동력 및 승인 가능성, 공장 이용가능성 및 비용 등이 주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주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고용문제를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 외국 노동자들은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이 가능하다.
- 이외에 세금문제를 세밀히 따져 보아야 하는데 외국기업들은 스위스 내 항구적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스위스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위스에는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설립이 가능하며, 정부의 규제도 거의 없는 편이나, 은행과 보험분야는 허가가 필요하고 또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 파트너 선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한 스위스인을 이사로 지정해야 하며 관리자는 스위스 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단독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1 인 또는 합동 서명권을 가진 관리자 중 최소한 2 인은 스위스 거주인이어야 함을 감안하여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라. 등록

회사 소재지를 결정하고 나면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ER)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서류에는 회사명, 자본금, 설립목적, 이사 및 관리자의 성명, 그리고 서명권자의 성명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등기서류는 등록된 공증인에 의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인증된 번역가에 의해서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6.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투자진출형태

스위스 투자 진출형태로는 자회사 또는 법인설립, 현존하는 스위스 기업의 주식취득, 합작법인 설립, 기술제휴로 나뉜다. 스위스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투자형태는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가 흔하다. 이와 더불어 법인설립 또한 선호되고 있으나 스위스 법에 따라 단독법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록, 허가, 세율 그리고 회계 등은 스위스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주식회사 설립(AG)
 - 최소 3 명의 주주(株主)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중 한 명은 스위스 국적을 소유, 거주지 또한 스위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1 인 경영 주식회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 최소 자본은 CHF10 만이며 이중 50% 인 CHF5 만은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유한회사 설립(GmbH)
 - 1 인 경영이 가능하며 스위스 국적을 소유, 거주지 또한 스위스에 위치해야 한다.
 - 최소 자본은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CHF2 만을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 설립자본 수준이 낮은 대신 자본금이 CHF2 백만으로 제한된다.

설립 형태별 장단점

	개인사업체	합작사업체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자회사
설립	특별한 설립절차 없음; 사업시작과 동시에 회사설립 완료. 상황에 따라 사업자등록 의무	특별한 설립절차 없음; 동업에 있어 특수한 형태 없음. 사업자등록 의무.	서류 및 공증 절차에 따른 설립. 사업자 등록 의무.	서류절차에 따른 설립.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자등록 의무
목적	개인의 사업 경영	무역 또는 생산.	무역 또는 생산.	무역 또는 생산.	모회사의 경영권 하에 사업
경영권	소유주	동업자	주주	동업자	모회사
설립자	내국인, 외국인	동업자중 1명 스위스 거주 의무	최소 3명의 설립자 필요	최소 2명의 설립자 필요	모회사
최소 자본금	-	-	CHF10 만, 이중 최소 CHF5 만 은행계좌 입금	CHF 만, 이중 CHF1 만 은행계좌입금. 자본금은 CHF2 백만을 초과할 수 없음.	의무 자본금 없음
장점	편리성	중소기업에게 적합, 기업의 국적 제한 없음	외국투자자의 요구조건과 일치, 투자가 익명성 보장, 유한 책임, 간편한 주식양도	저가의 설립비용, 2명의 설립자, 경영권자의 국적 제한 없음, 유한 책임	자본금 의무없음, 저렴한 설립비용, 스위스 국적의 경영권자 의무 없음
단점	책임여부	책임여부, 사회복지보험 의무	비용, 이중과세	복잡한 주식양도 절차, 구조조정 의 융통성	스위스 자회사에 대한 책임 없음

자료원: Greater Zurich Area AG

□ 설립비용

주식회사

자본금(예시)	CHF100,000	CHF500,000
국채발행비용	-	CHF2,500
사업자등록	CHF1,000	CHF1,500
경영자등록증	CHF1,000	CHF1,500
상담비용	CHF5,000~7,000	CHF5,000~7,000

유한회사

자본금(예시)	CHF20,000	CHF500,000
사업자등록	CHF1,000	CHF1,500
경영자등록증	CHF1,000	CHF1,500
상담비용	CHF4,000~6,000	CHF4,000~6,000

개인사업체, 합작사업체

자본금(예시)	개인	합작
사업자등록	CHF0/200	CHF400
상담비용	CHF500~1,000	CHF2,000~4,000

자료원: Greater Zurich Area AG

나. 지사개설 가이드

스위스에서 지속적으로 무역, 제조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십만 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업등록소에 지사로 등록해야 함. 연간매출액이 십만 스위스 프랑 미만인 경우에는 지사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등록된 지사는 경제적, 비경제적 관점에서 본사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지사는 마치 스위스에 있는 독립 법인체인 것처럼 존립해야 함. 지사경영인은 스위스 시민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명의 독점 서명권자나 두 명의 공동 서명권자는 스위스에 거주해야 함.

지사경영은 일반적 사업과정에서 본사와 독립되어야 하며, 지사는 자체 회계장부를 가져야 하지만, 장부관리는 본사나 제 3 자에 위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다. 등록절차

스위스 내 지사설립을 위한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음.

- 지사설립 인가 및 지사 대표를 결의하는 이사회 결의, 스위스에 거주하는 최소 1 명의 독점 서명권자 및 2 명의 공동 서명권자
- 지사의 확실한 독립을 보장하는 선언. 상업 등록소는 이 선언의 문서화를 규정하고 있음
- 회사가 정당히 조직되었고, 존재가 유효하며, 회사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회사등록 담당관(Registrar of Companies)의 공식증명서. 만일 이 증명서가 납입 자본액을 기술하지 않거나 이사성명 목록이 없는 경우 납입자본을 기술하고 이사 목록을 담은 선언을 첨부해야 함.
- 정관 사본관계자에게 스위스 지사설립을 위한 제반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정당한 법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상기의 모든 서류들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고, 1961 년 10 월 5 일의 헤이그 총회(Hague Convention)에 따른 apostille(공증인의 서명에 대한 입법)에 의해 합법화되며, 필요한 경우에 상업 등록소에 의해 인정된 번역가에 의해 지사가 등록되는 주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혹은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야 함.

라. 자본구조

사업적 관점에서는 공식적 최소자본 요구사항은 없으나 조세관점에서 "Thin Capitalization" 원칙은 지사에도 유사하게 적용 될 수 있음.

조세목적상 인정될 수 있는 지사 자본수준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를 문제이지만, 소규모 지사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5만 스위스 프랑은 되어야 함.

마. 경 영

지사 경영인 이외에 지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공식적인 경영기구에는 없다. 지사도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조세목적상 재무제표를 준비해야 하며 은행지점을 제외하고는 법적 감사나 공개요구 사항은 없다. 은행지점은 은행법 요구조항에 따름.

37. 입지선정

스위스는 산업구조 특성상 대량 생산체제의 제조업은 발달되어있지 아니하며, 주로 중소 규모의 첨단기술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유사한 공단지대는 발달되어 있지 않음.

다만 스위스의 3대 공업지역으로는 취리히, 바젤, 제네바/로잔 지역에 밀집한 지역은 한국의 공단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제조업이 발달한 거의 모든 지역에는 Industry Zone의 명칭이 붙은 지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단과는 상이하며 주로 사무실 또는 중소규모의 제조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규모도 그다지 큰 편이 아님.

입지선정 시 투자관련 정부기관 및 서비스기관 이용을 적극 추천함.

38. 공장설립

가. 공장설립 절차 개요

스위스에서 공장설립 절차는 타당성 조사에서 언급한 절차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세한 내용은 타당성 조사에서 언급한 절차를 참고하면 됨.

스위스는 전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국가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제조업분야의 투자는 사실 인건비 문제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고용문제

스위스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문제라 할 수 있음. 외국인의 경우 스위스에서 노동허가를 득하기가 쉽지 않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그러나 일정한 현지인 고용비율 조건을 맞출 경우 현지법인을 운영할 자질 높은 경영자와 기술자는 비교적 쉽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다. 공장 운영에 따른 세금문제

한편, 스위스의 세제는 세가지 차원, 즉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기초자치 단체에서 징수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장입지 고려시 이를 고려해야만 함.

연방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반면, 26 개주의 세율은 서로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율은 주세의 약 2 배에 달하고 있음.

스위스의 모든 소득세는 등급화되어 있으며, 연방 소득세율은 3.63%와 9.8% 사이임. 소득세는 주에 따라 1 년 또는 2 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각기 상이한 세금 산정기간과 세율은 납세 계획과 공장의 위치를 선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임.

라. 스위스 정부의 장려정책

연방정부는 경제적으로 침체된 주에 대해 경제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적절한 법을 제정하면 연방정부는 경제침체지역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개발융자금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경제개발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주들은 보통 10 년 기간 동안의 세금면제 또는 감면, 특별감가상각, 준비금에 대한 세금 특별감면 등의 여러 가지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 하고 있음.

또한 일부 주정부는 경제촉진 및 개발을 위한 전문사무실들을 설치하여 관심 있는 투자가를 위해 세금문제 해결 및 융자금 보증, 이자보조금을 포함한 제반 협상업무를 대행해 주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점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음.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 Location Switzerland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651 CH-8035 Zurich
 - Tel. +41 (0)43 300 56 00
 - Fax +41 (0)43 300 56 05
 - E-mail: info@locationswitzerland.ch
 - www.locationswitzerland.ch
-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 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Effingerstrasse 31-35 CH-3003 Bern
 - Tel. +41 (0)31 323 07 10
 - Fax +41 (0)31 324 86 00
 - E-mail: invest@seco.admin.ch
 - www.seco-admin.ch
- Osec Business Network Switzerland
 - Stampfenbachstrasse 85 P.O. Box 492 CH-8035 Zurich
 - Tel. +41 (0)1 365 51 51
 - Fax +41 (0)1 365 52 21

- E-mail: info@osec.ch
- www.osec.ch
- KTI/CTI
 - The Innovation Promotion Agency Effingerstrasse 27 CH-3003 Bern
 - Tel. +41 (0)31 322 21 43
 - Fax +41 (0)31 322 21 15
 - E-mail: info@kti-cti.ch
 - www.kti-cti.ch
- SwissParks
 - Club of Swiss Technology Parks and Business Incubators Lerchenfeldstrasse 5 9014 St. Gallen
 - Tel. +41 (0)71 274 75 00
 - Fax +41 (0)71 274 71 61
 - E-mail: info@swissparks.ch
 - www.swissparks.ch
- Fiscal Information Office
 - Eigerstrasse 65 CH-3003 Bern
 - Tel. +41 (0)31 322 71 48
 - Fax +41 (0)31 322 73 49
 - www.estv.admin.ch
- Swiss Fiduciary Association STV/USF
 - Schwarztörstrasse 26 CH-3001 Bern
 - Tel. +41 (0)31 382 10 85
 - Fax +41 (0)31 382 10 87
 - E-mail: info@stv-usf.ch
 - www.stv-usf.ch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Central Switzerland (Cantons LU, NW, OW, SZ, UR)
 - Mr. Arnold Kappler/Mr. Josef
 - Wechsler Business Promotion Central Switzerland
 - Kapellplatz 2
 - CH-6004 Lucerne
 - Tel. +41 (0)41 417 10 45
 - Fax +41 (0)41 417 10 49
 - E-mail: info@businesspromotion.ch
 - www.businesspromotion.ch
- DEWS Development Economic Western Switzerland (Cantons JU, NE, VD, VS)
 - Mr. Francis Sermet
 - Av. De Gratta-Paille 2

- Case postale 452
- CH-1000 Lausanne 30
- Tel. +41 (0)21 641 17 71
- Fax +41 (0)21 641 17 29
- E-mail: francis.sermet@dews.com
- www.dews.com
- Greater Zurich Area (Cantons AG, GL, GR, SH, SO, SZ, ZH)
 - Mr. Willi Meier/Ms. Sonja Wollkopf
 - Greater Zurich Area AG
 - Limmatquai 112
 - CH-8001 Zurich
 - Tel. +41 (0)44 254 59 59
 - Fax +41 (0)44 254 59 54
 - E-mail: info@greaterzuricharea.ch
 - www.greaterzuricharea.ch

41. 노무관리

가. 개황

750 만 인구 중 52%인 360 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노동력의 26%정도를 외국노동력이 차지하고 있음. 노사관계는 법정 최소 휴일, 최대 정년 등을 규정한 고용 계약에 관한 연방법률에 일차적인 기반을 두고 있으나, 많은 경우,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 들간에 준수되는 노동협약 (Agreement in the Engineering Industry)에 따르고 있음.

동 협약은 보통 노사간의 평화협정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평화 유지를 위한 상호간의 의무, 쟁의행위의 통일, 모든 갈등을 상호 협의와 중재로 해결하기 위한 사내와 경제부문에서의 노사의 의무 등이 명시되어있음.

나. 임금수준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됨. 임금수준은 지역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데, 취리히(Zurich)와 바젤(Basel)지역의 임금이 비교적 높은 편임.

외국인 기업의 월평균 임금 (스위스 프랑)

구분	임금	구분	임금
중간 관리자	8,000 ~ 12,000	비서 (2 개 국어)	4,500 ~ 6,500
숙련 기능공	3,700 ~ 4,500	비서 (3 개 국어)	5,200 ~ 6,500
미숙련 기능공	2,700 ~ 3,500	유자격 회계사	6,000 ~ 8,000
엔지니어	7,000 ~ 10,000	컴퓨터 프로그래머	6,000 ~ 7,000
사환	3,700 ~ 5,000		

자료원 : Adecco, 2005 년

다.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임.(토요일, 일요일 휴무) 사무실뿐 아니라, 공장, 건설 현장 등 작업장에서의 주당 정규 근무시간은 40-42 시간이며, 주 5일 근무가 보통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간외 근무는 25%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휴가혜택을 주어야 함. 초과근무는 연간 26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휴가제도

휴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음.

- 유급휴가 : 연간 최소한 4 주간의 휴가를 부여하며 20 세 이하의 고용인에 대하여는 최소한 5 주간의 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함.
- 임신출산휴가 : 연간 유급휴가는 임신출산휴가와 구별되어야 하며 임신출산휴가는 14 주이며 임신출산휴가 중에도 급여를 지불해야 함.
- 질병, 사고, 법적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결근시의 급여 지불 : 고용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또는 법적 의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할 수 없을 경우에도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해야 함.

마. 노동생산성

스위스는 고 임금국이고 임금 비용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반면, 노동 생산성이나 숙련도가 유럽에서 가장 우수하고, 결근율이 적으며 근무시간도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편임.

바. 해고

□ 노동법상의 해고절차

-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약통고 없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계약이 해지 되어 해고가 가능함. 단 10 년 이상 고용 하였을 시는 6 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해야 함.
- 계약기간 중에 해고코자 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함께 1 차년도 계약기간 중에는 1 개월 전에, 2 차년도 이후 제 9 차년도 기간 중에는 2 개월 전에 그리고 10 차년도 이후부터는 3 개월 전에 해약통고를 함으로써 해약이 가능함.
-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 차년도 계약기간 종료 후 양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연장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사전통고에 의해 해약이 가능하며 해약통고기간은 계약기간 명시된 경우와 동일함.

- 적법한 해고 (적법한 해고사유에 의한 적법한 해고통고기간 준수)시의 퇴직금 지불은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님.
- 단 50 세 이상의 고용인이나 20 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을 해고시킬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고용인이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인 배우자나 직계 비속 또는 고용인의 타 부양 가족에게 퇴직금을 지불해야 함.
- 퇴직금은 최소한 2 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고용 계약서상에 퇴직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되 최대 8 개월 분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 적법한 해고 시 고용주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고용계약이 지속되었을 경우에 고용인이 향유할 수 있었던 모든 금전상의 이익을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최대한 6 개월 분의 급여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 노동법

스위스의 노동법은 엄격하지 않으며, 기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음. 스위스의 주요노동법은 1964 년에 제정된 연방노동법으로서 동법은 (1) 특정산업을 위한 단 기노동규정(1975 년 11 월 제정), (2) 특정산업을 위한 특별규정(1975 년 11 월 제정), 노동자 보건 및 안전규정(1969 년 3 월 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장 근무여건 (1914 년 6 월 제정), 노동분쟁의 중재 (1949 년 2 월 제정), 단체임금교섭 (1956 년 9 월 제정)에 관한 연방법이 있으며 법정휴가보상 (1983 년 12 월 제정), 사회보장 (1946 년 12 월 제정), 노인보험에 관한 규정 (1947 년 8 월 제정), 의료보험 (1981 3 월 제정), 사고보험 (1981 년 3 월 제정), 실업보험 (1982 년 6 월 제정), 개인연금 (1982 년 6 월 제정) 및 직업훈련 (1987 년 4 월 제정)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단체권

외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유롭게 협력하고 그들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자유가 있음.

공업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체제 변화, 부유한 노동자들의 고도로 높은 생활수준, 중요한 정치, 사회 및 경제문제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회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노동조합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회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들 자신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공표할 수 있음. 스위스의 노동조합연맹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및 세계노동연맹, 유럽무역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음.

□ 단체협상권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단체협상을 벌이고 단체협상을 벌일 권리를 가지며 노동조합원 차별에 대해 그들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정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장려하고 있음.

아. 사회보장제도

스위스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삼주제도(Three-pillar system)'에 기초를 두고 있음.

- 一柱 :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노후와 생계에 대한 연방의무보험
- 二柱 : 퇴직 이후, 기존 생활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
- 三柱 : 자의개인 보험

처음 두 개의 카테고리는 최종소득 60% 수준의 연금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최고 연간 57,600 스위스 프랑) 개인적인 보험료에 의한 셋째 카테고리는 기타 다른 필요성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는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됨.

총임금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액 현황

보험종류	연간보험료	납부액	연간소득
	고용주	노동자	(CHF)
노후생계보험 ¹	4.2	4.2	-
연방상해보험	0.6	0.6	-
군복무 기간 중 수입보조제도	0.25	0.25	-
실업보험	0.2	0.2	97,200
연금 ²	5 -9.0	3.5-9.0	³
가족수당	1-2.5	-	-
산업재해보험 ⁴	0.1-0.7	-	97,200
기타			
남자 (최고한계지급비율)	-	1.412	97,200
여자(최고한계지급비율)	-	0.847	97,200

주 1 : 연간 근로 소득이 14,4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이라도 계속하여 보험료를 각출함.

주 2 : 보험료의 각출은 사원의 나이에 따름

주 3 : 25 세부터 정년인 65(62)세까지 연간 최소 19,200 스위스 프랑의 소득을 올리는 사원은

주 4 : 최대 38,400 스위스 프랑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적립비율은 관련된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다름. 많은 사용자들이 사원의 질병에 대비하여 손실보상보험에 가입 하고 있음. 보험료는 총 임금대비 약 1.2%임.

자. 외국인 고용

□ 노동허가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스위스 시민과 외국 주민들의 인구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EU 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의 이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로 2005년 9월 국민투표에서 합의하였음.

외국인 노동자에 주어지는 거주와 노동허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계절노동허가 (A 허가) :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으로 허가되며 한시적인 거주만을 허가함(최장 9 개월까지). 계절허가는 주로 건설이나 관광업 등에 이용됨.
- 일시 거주허가 (B 허가) : 전체적으로 1 년간 유효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함. 최초 일시 거주허가 수는 매년 전 주에 걸쳐 7,000 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각 주에 할당 인가 수를 구체적으로 배정함. 연방정부는 4,000 명의 인가를 배정 받음. 스위스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즉시 B 허가를 얻음.
- 영주허가 (C 허가) : 스위스에 10 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나, 협정을 맺은 국가 (벨기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의 국민으로서 5 년 이상 스위스에 거주한 자에게 인가함(독일, 오스트리아와도 협상 중임).
- 단기 거주허가 : 12 개월에 한하며 교육목적이나 단기 활동목적 예를 들면 특수계획의 수행목적에 한함. 12 개월의 기간은 14,000 명의 할당량을 한도 내에서 18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국경 노동자 허가 : 최소 6 개월 이상 인접국의 국경지대에서 거주하여온 외국인이 스위스 영토 안에서 일하는 경우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그들은 매일 그들의 거주지역(자국)으로 돌아가야 함.
- 예술인 허가 : 연간으로 계산하여 8 개월 동안 허가함.
- 120 일 허가 : 4 개월 미만의 거주자나 노동자들에게 소위 "120 일 인가"를 적용함. 할당제와 관계없는 이 제도는 외국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제한된 부분에 한하여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노동허가나 거주허가가 없는 외국인들은 스위스 사용자들에게 고용되거나 스위스에서 어떤 이윤추구 활동을 할 수 없음. 사용자는 외국인 고용원이 입국하기 전에 베른(Bern)에 소재하고 있는 연방산업 통상 노동부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주정부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시적 주거인가는 노동인가가 나면 신청자의 가족들(아내와 몇 명의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거주허가가 주어짐. 일시 노동거주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일시 허가 Quota 때문에 노동 허가 획득은 어렵지만, 경영자와 전문가들에 대한 허가는 쉽게 내주고 있음.

이러한 허가들은 단지 1 년간 유효하고 해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철저하게 정부의 관할로 이뤄지지만 실질적으로 허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주어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스위스에 처음 일년 거주하는 동안 Kanton(주), 직업, 기업 또는 고용주를 바꿀 수 없음. 새로 고용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노동, 거주 허가는 허가 후 3 개월 이내에 스위스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됨.

42. 조세제도

가. 세제개황

스위스 조세제도는 연방정부, 주(칸톤)정부, 구 등 3 차원의 행정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스위스 연방세법과 26 개 칸톤 세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볼 때 연방정부는 스위스 내 간접세의 거의 전체를 세원으로 사용 하는 반면 연방정부의 직접세 수입은 칸톤 주정부 또는 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직접 세의 대부분은 칸톤 주정부 및 구에 의해 부과되고 있음.

직접세 및 간접세 부담비중 (%)

구분	연방정부	칸톤 주정부	구	합계
총 세액	43.0	33.0	24.0	100.0
직접세	29.0	40.0	31.0	100.0
간접세	91.0	9.0	-	100.0

나. 연방세

- 직접세 (Direct federal tax ; direkte Bundessteuer) : 법인소득세는 8.5% 정률제이며 개인소득세의 경우 결혼 유무, 자년 유무에 따라 차등적용 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Mehrwertsteuer '01.1.1 부터 시행) : 7.6%
- 배당 및 이자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on interest ; Verrechnungssteuer) : 35%
- 인지세 (Stamp duty ; Stempelabgaben) : 1%
- 관 세 (Customs duty ; Einfuhrzoll)
- 기타 물품소비세 및 군면제세(Military exemption tax) 등

다. 지방정부세

-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 (Income tax; Einkommenssteuer)
- 법인자본세 (Capital tax on corporations; Kapitalsteuer)
- 순자산세 (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Vermoegenssteuer)
- 교 구 세 (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Vermoegenssteuer)
- 부동산이득세(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Grundstueck-gewinnsteuer)
- 상속 및 증여세 (Inheritance and gift taxes;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상기 세금은 칸톤별로 상이하며 부동산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 부동산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거래세(trade tax), 소방세(firebrigade tax) 등이 있음.

칸톤 및 구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소득세의 2 배 수준까지 달하고 있으며 칸톤의 조세 제도는 과세대상소득의 산정방식과 개인별 할인(allowance), 공제(deduction), 평가(assessment) 등의 제도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를 통일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Tax Harmonization Law (90.12.14 제정, 93.1.1 부터 시행)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칸톤별 또는 동일 칸톤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43. 외환관리

스위스 프랑화(CHF)은 안정적이고 신뢰적인 통화로 명성이 높은 편이다. 정치적, 경제적 변수로 인해 달러나 유로화가 불안정할 때도 스위스 프랑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었다. 1980 년 이후 미달러 대비 스위스프랑의 환율은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미달러(USD)와 스위스 프랑화(CHF)의 평균환율은 2003 년 1.3453, 2004 년 1.2417, 2005 년 1.2458 을 기록했다.

스위스는 외환의 구입, 매각, 송금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외환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으며, 금의 매입, 매각도 완전히 자유로움.

다만, 대외경제 지향적인 스위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 금리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통화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관리범위를 사전 공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프랑화의 가치를 위협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음.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집구하기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소유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주택임차가 보편적인데 침실 3 개, 응접실 1 개, 부엌 등 4 인 가족용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통상 2,500 에서 3,300 스위스 프랑 수준에 달하고 있음.

현지에서의 주택임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임차방식은 보편화 되어 있지 아니하며, 임대료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자가 신문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임차 희망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체류허가 신청절차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후 거주지 소재 Gemeindehaus 에 신청하면 됨.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비자발급 통지서, 여권, 사진 1 매를 제출해야 하며, 체류허가증은 신청 후 2 주 정도 면 발급됨.

다. 은행구좌 개설

UBS, Credit Suisse 등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면 됨. 외국인이라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좌개설이 가능함. 단 구좌개설은 외국인 체류허가증 (Ausländerausweis)을 득한 후에 가능함.

라. 전화신청

'98 년 10 월부터 민영화된 SWISSCOM 에 신청하면 됨. 전화 신청시에는 500 스위스 프랑을 예치해야 하며, 전화가설에는 보통 1 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Express 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통화가 가능함. 단, Express 신청시에는 추가 가설비용을 부담해야 함.

마. 자동차 구입

스위스는 자동차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스위스 도로에는 전세계에서 생산 되는 거의 모든 차종이 운행되고 있음. 신차 구입을 희망할 경우 차량 메이커별로 딜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중고차 시장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중고차 구입도 용이한 편임. 자동차 가격은 전량 수입품이기 때문에 신차 및 중고차 모두 약간 비싼 편임.